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2011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150여 개국 300만 명의 회원 및 지지자, 활동가가 인권 보호를 위해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 인권 선언과 다른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 발행: 2012년 3월

Peter Benenson House
1 Easton Street
London WC1X 0DW
United Kingdom
www.amnesty.org

© Amnesty International 2012

문서번호: ACT 50/001/2012
원문 언어: 영어

2012년 3월 27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번역 출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www.amnesty.or.kr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이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재판매가 아닌 경우 캠페인이
나
교육의 목적으로 모든 방법으로 재생산할 수 있음.
국제앰네스티는 영향력 평가의 목적상 보고서를
사용할 경우 이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다른 경우
의 복사나 다른 출판물에서의 재사용, 번역·번안
의 경우 사전에 서면 허가를 출판자로부터 득해야
하며, 요금이 청구될 수도 있다. 사용 허가 등 모든
문의는 copyright@amnesty.org로 연락 바람.

표지 및 후면 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사형집행중단 5,000일을
맞아 제작한 국회에 사형폐지특별법안의 통과를 촉
구하며 제작한 샌드아트 영상 스틸컷. 사형폐지특
특별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국제앰네스티

목 차

2011년 세계 사형제도 현황	3
2011년 전세계 사형 현황.....	6
지역별 현황	9
미주 지역	9
아시아·태평양 지역.....	15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25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2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8
부록 I: 2011년 보고된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 현황.....	46
2011년 보고된 사형집행 현황.....	46
2011년 보고된 사형 선고 현황	47
부록 II: 2011.12.31. 현재 사형폐지국과 사형존치국 현황.....	48
부록 III: 2011. 12. 31. 현재 사형제도 관련 국제조약 비준 현황	50
미주	52

일러두기

본 보고서는 사법체계 내에서 사형제도가 운영된 상황만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에 나온 각종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안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최대치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제 숫자가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어떤 국가는 의도적으로 사형제도 관련 사법 절차를 은폐하며 또 어떤 나라는 사형 선고 및 집행 건수를 기록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나라 이름 뒤 숫자와 "+"가 있을 경우,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추산한 숫자가 최소치임을 의미한다. 숫자 없이 "+"만 있을 경우, 해당 국가가 (한 건 이상) 사형을 선고했거나 집행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이다. 전세계, 또는 지역별 통계를 취합하는 경우, "+"는 2로 계산되었음을 일러둔다.

2011년 세계 사형제도 현황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지난 수십 년 간 경험을 쌓은 전 판사와 검사들이 내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일관성 있고, 인종적, 지리적 혹은 경제적 차별이 없으며, 항상 옳은 판단을 내리는 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팻 쿤, 일리노이 주지사. 2011년 3월 9일

2011년 초, 팻 쿤 주지사는 미국 일리노이주(州)가 사형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그러나 쿤 주지사 말고도 사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 세계 정치인과 학자, 변호사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이 처벌을 반대한다고 소리를 높여왔다.

2011년에 채택된 모로코의 새로운 헌법은 제20조에서 생명에 대한 권리를 천명했다. 새로운 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전인 지난 6월, 압델라티프 멘누우니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항은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¹

2011년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세계사형반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공개 포럼에서 나즈리 아지즈 법무장관은 시민사회의 활동이 시의적절하며, 구시대적 법을 정비하고 인권을 지키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도 부합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² 말레이시아는 사형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위 정부 관료가 이런 강한 의견을 냈다는 것은 향후 정부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란 사법부 산하 인권고등위원회 모하메드 자바드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2011년 11월 유엔 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형 집행 건수를 낮출 방법은 항상 있는 것 같다. 이란에서 집행되는 사형의 74%가 마약 밀매 관련 범죄 때문이다. 이것이 옳든 그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의문점은 '이런 잔인한 처벌이 범죄율을 낮췄는가?'이다. 사실 전혀 낮추지 못했다."³

정부 관료들로부터 나온 이런 말들은 사형폐지론이 전 세계적에서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사형폐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들에게서 나온 표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는 시민사회 역시 상당한 기여를 했다.

중국 베이징대학교의 장치안판 법학 교수에 의하면, 유명한 사형 사건 몇 개에 대한 정보만 대중에게 알려주면 진정한 토론은 불가능해진다. "사형 집행 통계를 공개해야지만 중국에서 사형폐지에 관한 이성적인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장치안판 교수는 지적한다.⁴

2011년 12월,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사형폐지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⁵ 연합회는 연례 인권 회의에서 채택한 선언문에서 "사형폐지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 되었고,

사형폐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밝혔다.⁶

그러나 강력범죄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그리고 사형수로 살아온 사람들 이야말로 가장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라이스 부이안은 911 혐오범죄의 기류 속에서 근거리에서 자신에게 총을 쏘마크 스트로우먼이 감형을 받도록 캠페인을 진행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부이안은 "나는 마크를 증오한 적이 없다. 내가 따르는 종교는 항상 복수보다는 용서가 옳다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주장했다.⁷

짐바브웨의 에멀슨 음낭가그와 국방장관은 짐바브웨이 독립 전에 사형수로 지냈던 자신의 경험 때문에 사형폐지론자가 됐다. 그는 "내가 사형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상당 부분 사형수로서 끔찍한 시간을 보내면서 생명의 고결함과 수감자 재활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⁸

위와 같은 이야기는 2011년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 관련 발전 상황과도 일치한다. 사형폐지를 향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은 계속 됐다.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2010년에는 23개국이 사형을 집행한 데 비해, 2011년에는 20개국만이 사형을 집행했다. 작년에 기록된 사형 집행 건수는 총 676건이다. 이는 2010년보다 증가한 수치인데, 이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세 나라에서 사형 집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기록된 사형 선고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2011년에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진전이 있었다. 미국은 주요 8개국(G8) 중 유일하게⁹ 사형을 집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리노이주(州)가 사형을 폐지한 16번째 주가 되었고, 11월에는 오레곤주(州) 존 키츠헤이버 주지사가 자신의 임기 동안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주지역 다른 나라에서도 전체적으로 사형 선고 건수가 줄어들었고, 사형을 선고한 카리브해 연안국 숫자도 줄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19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항상 사형제도를 강력히 찬성해온 싱가포르에서도 사형 집행이 없었다.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과 대만 등 나라에서 사형제도와 사형폐지에 대한 의미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시에라리온이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포했고, 나이지리아에서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가나의 헌법검토위원회(Constitutional Review Commission)는 개헌 과정에서 사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부르키나파소와 짐바브웨의 여러 고위급정치인들도 사형폐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스와질랜드 대표단은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스와질랜드의 입장이 "법률상으로는 사형존치국, 사실상으로는 사형폐지국"이라고 설명했다.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튀니지에서는 사형 선고 건수가 줄었다. 그러나 2011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일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와 집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이전보다 더 힘들었다.

벨라루스는 유럽과 구소련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11월 말에 라트비아 의회는 특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2012년 1월 1일자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97번째 국가가 되었다.

전세계적 사형폐지 추세

- 2011년 G8 회원국 중 사형을 집행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G20회원국 중에는 3개국(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이 사형을 집행했다.

- 2011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56개 회원국 중 미국과 벨라루스만이 사형을 집행했다.
- 2011년 아프리카연합 54개 회원국 중 4개국(이집트,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이 사형을 집행했다고 알려졌으며 38개국은 법률상·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 2011년 영연방 54개국 중 2개국(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1년 아랍연맹 22개국 중 9개국(이집트, 이라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이 사형을 집행했다.
- 2011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 중 2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 2011년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75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2011년 10월 11일, 온두라스는 사형 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의 12번째 당사국이 됐다. 마찬가지로 10월에 라트비아도 모든 경우에서 사형을 폐지하도록 하는 유럽인권협약 제13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베냉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한 법안을 채택했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당사국이 유보를 통해 전시예외적으로 사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2011년 말 현재, 몽골도 비슷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상태였다.¹⁰

사형을 보다 제한적으로 사용하려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여러 나라에서 포착됐다. 예를 들어, 중국¹¹, 감비아, 대만의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줄였다.

2011년에 사형수를 감형 혹은 사면한 나라는 알제리, 바레인, 바베이도스, 카메룬, 중국, 에디오피아, 감비아, 인도, 이란,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몽골, 모로코/서사하라, 미얀마,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한국, 남수단, 수단, 태국, 튀니지,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미국, 베트남, 예멘, 잠비아 총 33개이다.

2011년에 바베이도스, 보츠와나, 중국, 인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¹², 아랍에미리트, 미국, 예멘과 잠비아 총 12개 국에서 일부 사형수가 무죄 판결¹³을 받고 풀려났다.

사형제도에 관한 모라토리엄(유예)이 필요한 이유

1977년 미국이 사형집행을 재개한 이후, 존 키츠하버 오레곤 주지사가 첫 임기 중 승인한 사형집행은 단 두 건에 불과했다. 두 명의 사형수 모두 사형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상태였다. 2011년 세 번째 임기에 들어 키츠하버 주지사는 오레곤 주의 사형제도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을 선포했다.

2011년 11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키츠하버 주지사는 "더 이상 이처럼 위태롭고 불공평한 제도에" 속하기를 원치 않는다며 오레곤 주의 사형제도는 "공정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으며", "신속하거나 확실하지도" 않은 제도이고, 수감자가 항소를 포기하고 사형집행에 "자원"했는지의 여부가 "누구를 사형시키고 사형시키지 않을 것인가를 정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좋은 지표가 되는 정의의 왜곡"이라고 밝혔다. 많은 수의 판사와 검사, 입법자들을 비롯해 범죄 피해자 유가족들도 오레곤 주의 사형제도는 "제 기능을 못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키츠하버 주지사는 사형제도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계기로 "오랫동안 미뤄온 현 사형제도 관련 정책과 시스

템에 대한 재평가"를 가능케 하는 것이 모라토리엄 선언의 목적이자 그의 희망이라며 "더 이상 현 제도의 모순과 불공평함을 모른 척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키츠하버 주지사는 또, 오레곤 주는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지원해 줄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말을 맺었다.

2011년 전세계 사형 현황

2011년 최소 20개국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 독립한 남수단을 포함하더라도 이는 2010년에 사형을 집행한 23개국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10년 전 31개국이 사형을 집행한 것에 비하면 이는 급격한 감소라 할 수 있다.

2011년 보고된 사형 집행 건수

아프가니스탄 (2), 방글라데시 (5+), 벨라루스 (2), 중국 (+), 이집트 (1+), 이란 (360+), 이라크 (68+), 말레이시아 (+), 북한 (30+),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가자지구 3¹⁴), 사우디아라비아 (82+), 소말리아 (10건 중 과도연방정부 6, 폰트랜드 3, 갈무두그 1), 남수단 (5), 수단 (7+), 시리아 (+), 대만 (5), 아랍에미리트 (1), 미국 (43), 베트남 (5+), 예멘 (41+)

2011년 전 세계적으로 최소 676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최소 527명이 사형당한 2010년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이란,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형 집행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수치가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이 676명이라는 수치에는 2011년 중국에서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진 수천 명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국제엠네스티는 2009년 보고서부터 중국의 사형 집행 추정치를 밝히지 않아왔다. 중국에서는 사형 관련 수치가 국가기밀로 분류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년 동안 사형 집행 건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제엠네스티는 중국 당국이 연간 사형선고 및 집행 관련 수치를 밝혀 그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제엠네스티는 미확인된 또는 심지어 비밀리에 집행된 사형이 이란에서 상당히 많았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입수했다. 이를 포함할 경우,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형 집행 건수가 거의 두 배로 높아질 수 있다.

소수의 나라만이 2011년 사형에 대한 공식 수치를 공개했다. 벨라루스, 중국, 몽골, 베트남은 사형 관련 수치들을 여전히 국가기밀로 취급하고 있다. 이집트, 에리트리아, 리비아, 말레이시아, 북한, 싱가포르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벨라루스, 일본, 베트남은 사형수 뿐 아니라 사형수의 가족, 변호사에게도 다가오는 사형 집행일을 알려주지 않았다. 벨라루스와 베트남은 사형수 가족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2011년 보고된 사형 선고 건수

아프가니스탄 (+), 알제리 (51+), 바레인 (5), 방글라데시 (49+), 벨라루스 (2), 보츠와나 (1), 부르키나 파소 (3), 카메룬 (+), 차드 (+), 중국 (+), 콩고공화국 (3), 콩고민주공화국 (+), 이집트 (123+), 감비아 (13), 가나 (4), 기니 (16), 가이아나 (3+), 인도 (110+), 인도네시아 (6+), 이란 (156+), 이라크 291+, 일본 (10), 요르단 (15+), 케냐 (11+), 쿠웨이트 (17+), 레바논 (8), 라이베리아 (1),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2), 말레이시아 (108+), 말리 (2), 모리타니아 (8), 몽고 (+), 모로코/서사하라 (5), 미얀마 (33+), 나이지리아 (72), 북한 (+), 파

키스탄 (313+),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5+ 중 가자지구 4, 서안지구 1), 파푸아뉴기니 (5), 카타르 (3+), 세인트루시아 (1), 사우디아라비아 (9+), 시에라리온 (2), 싱가포르 (5+), 소말리아 (37+ 중 과도연방정부 32+, 푸틀랜드 4, 갈무дук 1), 한국 (1), 남수단 (1+), 스리랑카 (106), 수단 (13+), 스와질란드 (1), 시리아 (+), 대만 (16), 탄자니아 (+), 태국 (40), 트리니다드토바고 (2), 우간다 (5), 아랍에미리트 (31+), 미국 (78), 베트남 (23+), 예멘 (29+), 잠비아 (48), 짐바브웨 (1+)

2011년, 총 63개 국에서 최소 1,923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의 연구에 근거해 얻은 안전한 최소치로서, 2010년 전 세계 총 2,024건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2011년 말 현재, 전 세계에 최소한 18,750명의 사형수가 있다.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각 국가에서 수집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 최소치이다.

2011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참수형 (사우디아라비아), 교수형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집트, 이란, 이라크, 말레이시아, 북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남수단, 수단), 독극물 주사형 (중국, 대만, 미국), 총살형 (벨라루스, 중국, 북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소말리아,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예멘)

공식적인 보고에 따르면, 이란에서 최소 세 명이 18세 미만일 때 저지른 범죄로 사형을 당했는데,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비공식 보고에 따르면, 이런 경우가 총 7건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식적으로 "미성년자"로 묘사된 한 사형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형당했다. 모리타니아에서도 18세 미만일 때 저지른 범죄로 세 명의 청년이 사형을 선고 받고 항소해서 징역 12년으로 감경되었다. 수단에서 두 명의 미성년자가 사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멘에서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18세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네 명의 사형수가 조만간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출생신고서 등 명확한 증거가 없어 수감자의 실제 나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종종 있다.¹⁵ 국제앰네스티는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들이 여전히 사형수로 남아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투석형으로 사형이 집행되거나 투석형 선고가 새롭게 있었다는 보고는 없다. 하지만 이란과 북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소말리아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대다수 나라에서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을 통해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 즉 고문이나 강압을 통해 얻어낸 "자백"을 근거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일은 특히 벨라루스, 중국, 이란, 이라크, 북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졌다.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이런 "자백"이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된 적이 있는데, 이는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인도와 이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트리니다드토바고, 잠비아에서는 의무적 사형 선고 제도가 존속하고 있다. 의무적 사형 선고는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이나 해당 범죄가 일어난 맥락을 고려할 여지를 없애기 때문에 인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

2011년에는 사람들이 살인을 의도하지 않은 생명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받거나 처형당했는데, 이는 자유권규약 제6조에 명시된 "가장 중한 범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 예멘 등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란은 간통과 "남색(sodomy)", 또 이란의 배교(背教)나 파키스탄의 신성모독과 같은 종교적 범죄, 사

우디아라비아는 "마법", 콩고공화국은 인골 밀매, 중국은 경제 관련 범죄, 사우디아라비아는 강간, 케냐와 잠비아는 "가중된" 강도죄 등으로 2011년에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여러 형태의 "반역죄",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와 "국가에 반하는 범죄"도(이란에서 신에 대한 적개심을 의미하는 "모하레베(moharebeh)"와 같은) 생명의 침해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사형에 처해졌다. 감비아, 쿠웨이트, 레바논, 북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소말리아가 여기에 해당된다. 북한의 경우, 국내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아랍에미리트 두 나라는 2011년에도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사형폐지를 향한 전세계 흐름에 역행했다. 방글라데시, 중국, 이집트, 인도, 이란, 나이지리아와 시리아는 사형 선고의 범위를 넓혀 국제인권기준으로부터 후퇴했다.

또한 2011년에 바레인,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레바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서안 및 가자지구), 소말리아와 미국 등 나라에서는 군사법원에서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하는 일이 많아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역별 현황

미주 지역

2011년 미국은 미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한 나라이긴 하지만, 동시에 사형 폐지를 향한 진전이 일부 나타나기도 했다. 일리노이 주는 미국에서 16번째 사형폐지 주가 되었고, 2007년 이후 뉴저지 주(2007년)와 뉴멕시코주(2009년)에 이어 사형 폐지 법률을 제정한 세 번째 주가 되었다. 그리고 11월에는 오레곤주가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2011년에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미국의 34개 주 중 13개가 총 43건의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 중 상당 부분(74%)이 미국 남부 지역에서 집행됐는데, 특히 텍사스 주는 13건의 사형을 집행해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앨라배마(6), 애리조나(4), 델라웨어(1), 플로리다(2), 조지아(4), 아이다호(1), 미시시피(2), 미주리(1), 오하이오(5), 오클라호마(2), 사우스캐롤라이나(1), 버지니아(1) 주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사형정보센터(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는 2011년에 총 78건의 사형이 선고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80 ~ 90년대 매년 평균 280건의 사형이 선고된 것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사형 선고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으며, 새롭게 사형을 선고하는 나라의 숫자도 줄고 있다. 전년도의 경우 5개 나라가 사형을 선고했으나, 2011년에는 가이아나, 세인트루시아 그리고 트리니다드토바고 세 나라만 사형을 선고했다. 카리브해 지역에서 범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러 사형 존치국 정부가 사형 집행을 계속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반면, 바베이도스 정부는 연말까지 의무적 사형 선고를 폐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법률 개정이 실제 이루어지면 트리니다드토바고는 미주지역에서 유일하게 특정 범죄에 대해 의무 사형 선고를 유지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2011년 미주지역에서 총 84건의 새로운 사형이 선고됐다. 가이아나가 최소 3건, 세인트루시아가 1건, 트리니다드토바고가 2건 그리고 미국이 총 78건을 기록했다.

2011년에 **안티구아바부다**는 단 한 건의 사형도 선고하지 않았다. 2011년 10월 4일, 안티구아바부다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를 거치면서 인권 현황을 평가받았다.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안티구아바부다 대표단은 사형폐지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단은 안티구아바부다가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이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형폐지를 향해 가고 있음을 피력했다. 또한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을 모든 사형 사건에 적극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추밀원(Privy Council)이 요구하는 국내 법적 절차와 기준 그리고 유엔의 사형 수 권리 보호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표단은 예를 들어 살인 등 기소 가능한 범죄에 대해 예비조사 대신 서면 적부심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재판을 기다리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사형을 폐지하고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도입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바하마에서는 새로운 사형선고가 없었다. 2011년 말 기준, 사형수 한 명에 대한 형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 사형수는 선고 받은 지 5년이 아직 안됐으며, 자메이카의 "프랫·모건 대 검찰총장 (Pratt and Morgan v. Attorney-General)" 사건에 대한 추밀원의 1993년 판결에 따라 아직 사형을 감형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추밀원의 판결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한 이후 5년 이내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 혹은 대우이며, 이런 경우 사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해야 한다.

영국 추밀원의 사형선고에 대한 '두 가지 원칙'

2011년 6월 15일 영연방의 최종 항소법원인 런던 소재 영국 추밀원 사법위원회는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막소 티도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도 형의 재선고를 위해 해당 사건을 바하마 대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추밀원 판결은 "해당 범죄가 극도로 악랄하고 예외적이며, '전대미문'이자 '최악 중 최악'의 사건이라는 사실에 기반한 경우" 및 "범죄자가 교화될 것이라 믿을만한 가능성이 없고 사형이라는 최고벌 외의 수단으로는 처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사형이 집행돼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¹⁶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해당 사건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판사가 정신감정 보고서를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제 2의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추밀원은 바하마 대법원에 사형 집행을 고려할 경우 교화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단언하며 판결문을 맺었다.

사형 집행이 적절한 상황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추밀원은 지난해 바하마의 두 번째 사건 판결에서 더 자세히 답하고 있다. 2011년 8월 9일 발표한 어니스트 록하트 사건 판결문에서, 추밀원은 첫 번째로 살인죄의 본질을 평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최악 중 최악'이라는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두 번째 원칙인 '범죄자가 교화될 타당한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밀원은 또한 어떤 사건이든 사형선고를 고려하는 경우, 자문 정신과 전문의의 보고서가 먼저 마련되어야 타당한 교화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 교도소의 보호관찰 보고서만으로는 이처럼 중대한 결정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1년 10월, 바하마 의회는 살인 사건에서 어떠한 경우에 사형 혹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2011년 형법 개정안은 가중된 살인의 경우 오로지 사형 또는 사실상의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 처벌 관련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바베이도스**에서는 새로운 사형선고가 없었다. '더 바베이도스 어드보킷(*The Barbados Advocate*)'라는 국내 신문의 2011년 10월 2일 자 보도에 따르면, 아드리엘 브라스웨이트 법무장관 겸 내무장관은 연말까지 의무 사형 선고를 폐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완료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바베이도스에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에 관련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상태였다.

2011년에 **벨리즈**에도 새로운 사형 선고가 없었다. 연말 기준 사형수는 한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5월 13일, 정부는 사형 선고를 더욱 원활히 하는 법안을 의회에 발의했다. 2011년 벨리즈 제8차 개헌안은 고문 그리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 혹은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7장을 개정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법안은 "어떠한 사유로도" 사형이 헌법과 불일치하거나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한 사유에는 사형 대상 범죄에 대한 심리나 기소가 늦춰지거나, 사형 집행이 연기되거나, 혹은 사형 집행을 앞 둔 사형수의 수감조건, 또는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명령을 한번 이상 낭독하여 사형수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쿠바의 경우, 2010년 남아 있는 사형수의 형을 모두 감형했으며, 2011년에 새로운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또한 연말 현재 사형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2011년 2월

16일 ~ 17일 쿠바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관련 정기 보고서를 검토했다. 3월 3일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인종분리정책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환영하지만, 인종분리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에 주목하면서 쿠바 당국이 "사형폐지 가능성을 고려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형에 대한 현 모라토리엄을 공식화할 것"을 요청했다.¹⁷

과테말라는 작년 동안 사형 선고나 집행이 없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치안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사형이 여러 번 언급되었다. 2011년 대선 당시, 최종 당선자를 포함한 여러 대선 후보는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가이아나의 경우, 연중 세 명에게 사형이 선고했으며, 2011년 12월 31일 현재 34명의 사형수가 있다. 가이아나에서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것은 1997년이다. 각각 23년과 16년을 사형수로 살아온 두 명의 수감자가 자신의 수감 기간이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며 사형선고를 뒤집어 줄 것을 요구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연말 현재 이 헌법 소원이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었으며, 두 명 모두 여전히 사형수로 수감 중이었다.

자메이카에서는 새로운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으나 연말 현재 최소 7명의 사형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 4월 8일, 자메이카 총독은 2011년 '기본권과 자유에 관한 헌장' 개정안(개헌안)을 승인함으로써, 기존의 헌법 제3장을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해 기본권과 자유를 더욱 포괄적이고 강력히 보호하도록 했다. 개헌안이 생명권과 고문이나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 혹은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내용 일부(13조7항과 13조 8항)는 국제 및 지역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조항들은 사형이 헌법의 기본권 및 자유 원칙에 불일치하거나 위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사형에 대한 헌법소원을 어렵게 만든다. 사형 집행이 연기되거나, 혹은 형 집행이 임박한 사형수가 수감 중에 처한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 등에 대한 고려도 마찬가지이다. 국제인권기준과 여러 국내 및 지역 판례를 보면, 이런 상황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으며, 동시에 사형수는 가능한 모든 사법 절차를 활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2011년 10월 19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자메이카의 자유권규약 이행 여부를 검토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에 자메이카가 특정 범죄에 대한 의무 사형 선고를 폐지했으며, 1988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자메이카가 사형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메이카가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요청했다.

2011년에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도 새로운 사형 선고가 없었다. 2011년 1월 28일, 세인트키츠네비스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세인트키츠네비스 대표단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여러 처벌 중 하나로 사형을 유지하기로 정부가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동시에 사형이 반드시 범죄를 예방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대표단은 사형수가 항소를 제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있도록 사형수의 법적 권리를 점검하고 조사하라는 권고는 받아들였지만, 사형을 폐지하고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라는 권고는 거부했다.¹⁸

2011년 **세인트루시아**에서는 한 건의 사형 선고가 있었다. 세인트루시아는 2011년 1월 25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지난 15년 동안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세인트루시아 대표단은 또한 현재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어서 정부 당국이 사형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고 했다.¹⁹ 유엔 인권이사회는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 모든 사형을 감형할 것, 유엔총회의 차기 '사형제도의 사용에 관한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지지할 것 그리고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세인트루시아는 이를 거부했다.²⁰

2011년에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에는 새로운 사형이 없었다. 2011년 5월 10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통해 인권 현황을 검토 받았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대표단은 의무 사형 선고를 폐지했으며, 사형을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만 선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5년 이상 사형수로 복역할 경우 형이 종신형으로 감형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표단은 사형을 폐지하고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라는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²¹

수리남은 2011년 5월 6일에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수리남 대표단은 정부가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각에 제출한 상태이며, 그 후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²² 2011년 말 현재 이 개정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었다.

2011년 **트리니다드토바고**는 두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연말 현재 총 31명의 사형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2월 28일 정부가 발의한 범죄율 상승 대응 관련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 법안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사형 집행을 재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의회는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으나, 야당이 지지하지 않아 법안은 부결됐다. 만약 통과됐더라면 항소 진행 중에도 사형이 집행될 수 있게 됐을 것이며 수십 명의 사형수가 즉각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국제인권법 및 국제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트리니다드토바고와 의무적 사형 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헌법은 의회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부과하거나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 1장 2조에는 '유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1976년 헌법 공포 당시의 현행법과 현행법 개정안에 있어 기본권과 자유에 대한 제한과 보호 조항에 예외를 허락하지만 "종전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헌법은 또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과 자유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유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법안이 상정될 경우 의회의 최종 투표를 거쳐 "양원에서 3/5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사형수들이 최종 항소를 통해 의무적 사형선고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추밀원은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의무적 사형 선고의 위헌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검토했다. 여러 해에 걸쳐 국제적, 지역적, 국가 기관들은 의무적 사형 선고가 인권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동적이고 의무적인 사형 부과는 피고의 개별적인 상황이나 특정 범죄에 대한 정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형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생명 박탈에 해당하며 이는 규약 6조 1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²³

2003년 트리니다드토바고의 발키순 루달 사건에서 추밀원은 의무적 사형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현행 법안은 사형이 살인죄에 대한 유일한 형벌이 아니라 최고 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 2005년, 추밀원은 이전 판결을 뒤집었다.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찰스 매튜 사건에서 추밀원은 의무적 사형 부과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임을 재확인하면서도,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의무적 사형 선고는 헌법이 공포된 1976년 사람에 대한 폭행법(1925)이 당시 현행법이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봤다. 그러므로 의무적 사형 부과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양원의 3/5 이상의 승인을 받아 법안 수정을 거쳐야만 폐지가 가능했다.

2011년 들어 추밀원 사법위원회는 의무적 사형 부과 문제에 대해 다시 살펴봤다. 트리니다드토바고의 니로드 미겔 사건에서 항소인은 자신이 1997년 개정된 형법 2A(1)항에 따라 중대살인죄로 의무적 사형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추밀원은 2011년 6월 15일 판결문에서 "의무적 사형 선고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며, 중대살인에 대한 의무적 사형 부과 규정을 도입한 1997년 개정형법에 헌법 공포 당시의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았던 중대살인이라는 범죄가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봤다. 이 같은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상 '유보 조항'에 따라 의회의 3/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님로드 미겔의 유죄 판결은 유지하되, 의무적으로 내려진 사형 선고는 번복되었다.

트리니다드토바고는 2011년 10월 5일에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대표단은 정부 당국이 공식적인 모라토리움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1999년 이래 그런 처벌에 대해 사실상 모라토리움을 유지해왔고, 그후 그런 처벌을 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전 사회적으로 사형에 대한 진중한 토론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사형을 폐지하고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라는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²⁴

2011년 세계는 사형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으나, 미국만은 예외였다. 미주지역 다른 나라에서는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는 반면, 미국은 지난 해 G8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했다. 2011년 미국 및 주요 경제대국들의 여러 정치인과 의원들이 사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 정부는 여전히 사형존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정신에 걸맞게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리더십을 미국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²⁵ 2011년 3월, 미국은 지난 2010년 11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과정에서 타 정부가 미국 인권 상황과 관련해 내린 권고에 대해 공식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23개 국이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사형 집행에 대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것을 권고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미국 정부는 사형 선고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에 대해 연구를 하고, 또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말라는 쿠바와 아일랜드의 요청은 거부했다. 일부 지적장애인의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해당 권고를 받아들일겠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수감자에 대해서는 이 권고를 거부한다고 했다. 또 다른 권고에 대해서는 미국은 "사형이 앞으로도 우리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보장했다.²⁶

그러나 앞선 약속과는 맞지 않게, 몇 주 후 미국 국방부는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 수감 중이며, 기소되어 군사위원회 재판에 회부된 6명의 외국인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²⁷ 미국의 군사위원회 재판은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군사위원회는 재판을 받게 될 피고인을 포함해 관타나모 수감자를 대상으로 자행된 국제법에 위배되는 인권침해 행위를 승인하거나, 이 문제 해결이나 책임 추구를 방해한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또한 군사위원회는 차별적이기도 하다. 미국 내국인은 일반 연방 법원에서 민간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관타나모 수감자들은 미군 장교가 판사인 재판을 받게 되며, 일반 재판에 비해 공정하지 못한 절차 및 규범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재판에서 내려지는 사형 선고는 최고 수준의 공정재판 기준을 따르지 않는 재판에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국제법을 위반하게 된다.²⁸ 2011년에는 이 여섯 수감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예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7월 7일 움베르토 리일(Humberto Leal)을 처형함으로써 2011년에도 국제적 의무를 다시 저버렸다.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는 미국이 움베르토리일을 포함한 51명의 멕시코인과 관련하여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51명은 미국에서 체포된 후 영사 관련 제반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비엔나협약 위반으로 피의자들이 불이익을 당했는지 미국이 관련 재판의 판결 및 선고를 사법적으로 "검토 및 재고"를 할 것을 미국에 명했다. 2008년 이들 중 한 명인 호세 메델린 텍사스에서 처형된 후, 국제사법재판소는 애초 판결이 "온전히 유효"하다면서, 움베르토 리일도 사법 심사 및 재고 과정을 거치는 상황에서 처형당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소는 이번 판결이 미국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

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이를 "무조건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위이다"라고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2011년 6월 14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패트릭리히(Patrick Leahy) 상원의원이 미 의회에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법원은 움베르토 리일의 형 집행을 연기해주지 않았으며, 텍사스 사면 및 가석방 위원회(Texas Board of Pardons and Paroles)는 의회가 법을 통과시킬 때까지 형 집행을 유예시켜주자는 안을 부결시켰다.

2011년에도 미국이 정신장애를 가진 수감자에 대해 사형을 사용해 우려를 자아냈다. 11월 15일,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66세 레지널드부룩스가 사형을 선고받은 지 거의 30년 만에 오하이오에서 처형당했다. 브룩스는 1982년 3월 자신의 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983년 11월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앨라배마주(州)에서는 41세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에디 두발 파웰이 6월 16일에 처형당했다. 학습장애를 앓고 있는 파웰을 처형하는 것은 '엠킨스 대 버지니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은 집행됐다.

어떤 사건에서는 살인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의 처형을 찬성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유가족이 사형 집행을 적극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994년 오하이오에서 조니 바스톤에 의해 살해당한 한국계 이민자인 마종훈의 유가족은 사형이 생명 존중에 위배된다며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을 반대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 라이스 부이안은 2001년 마크 스트로우먼의 총에 맞았으나 살아남았다. 이 사건은 최악의 포스트 9.11 혐오범죄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부이안이 스트로우먼의 사형 선고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7월 20일 결국 스트로우먼은 처형당했다.

마크 스트로우먼은 2001년 10월 4일 인도 이주민 바수데브 파텔을 살해한 혐의로 2002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스트로우먼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당국은 스트로우먼이 2011년 9월 15일 파키스탄 이주민 와카르 하산을 총으로 살해하고, 2001년 9월 21일 방글라데시 이주민 **라이스 부이안**에게 총을 쏜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근거리에서 엽총으로 얼굴에 총격을 당한 라이스 부이안은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그럼에도 부이안은 마크 스트로우먼의 사형 선고를 감형해 달라고 호소했다. "어떤 상황에서든 증오로는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2001년 9.11 참사에 대한 증오 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나서 깨달았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이 사건으로 나는 증오가 오직 두려움과 고통, 분개와 재난 만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 증오는 건전한 인류 성장에 걸림돌을 만들어 사회 전체를 쇠퇴시킨다. ...나는 이미 수년 전에 마크 스트로우먼을 용서했다. 무지한 그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2011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라이스 부이안은 왜 마크 스트로우먼의 목숨을 구하려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서는 선량한 품성과 강한 신념으로 나를 올바르게 길러 주셨다.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가르치셨다. 누군가 나를 해치더라도 복수로 갚으려 하지 말고, 용서하고 잊어버려라. 그래야 나 자신은 물론 그들에게도 좋은 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믿는 이슬람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 스트로우먼은 전쟁 행위로 이런 일을 벌였으며, 많은 미국인들도 것처럼 이슬람 교도를 썩 버리고 싶어했고 자신은 그럴 용기가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나는 그저 이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나는 그를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단지 무지했기 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 멀리스 사람 하나를 사형시키는 것이 9월 11일에 일어난 일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다."

2011년 9월 21일 조지아주(州)는 트로이 데이비스를 처형했는데 그의 사형집행을 둘러싸고 사형폐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활동들이 전개되었다. 데이비스는 1991년 경찰관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를 둘러싼 의혹이 많이 제기됐다. 데이비스는 주로 목격자 진술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재판 이후에 핵심 진술인 9명 중 7명이 진술을 철회하거나 변경했다. 일부 진술인은 데이비스를 지목하는 진술을 하거나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경찰이 강제하거나 압박을 가했다고 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국제앰네스티의 트로이 데이비스 사형 반대 캠페인에 전세계 수천 명의 개인과 많은 단체가 동참해 감형을 요구했다. 감형 요구 서명운동에 약 100만 명이 서명했고, 전세계 언론이 데이비스 사건을 다뤘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

2011년 아시아 · 태평양 지역 7개 국가가 사형을 집행했다. 아프가니스탄은 2년 만에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그러나 사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긍정적인 움직임도 분명히 드러났다. 2011년에는 19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이 단 한 건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싱가포르에서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몰디브,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한국, 스리랑카, 태국은 여전히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5건의 사형이 선고된 것 외에 태평양 지역 역시 사형을 사용하지 않았다. 중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대만에서는 사형제도를 둘러싼 전국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정부가 해외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국민을 위해 나서는 일도 있었다.

이런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아시아 · 태평양정부들은 국제기준을 위반하면서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법원이 고문이나 기타 압박을 가해 받아낸 "자백"을 근거로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일이 많았다. 또한 여러 나라 사법제도 상의 맹점 때문에 많은 외국인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많은 외국인이 "가장 중한 범죄" 범위에 들지 않는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마약 관련 범죄에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대다수 정부는 사형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의 사형 현황에 대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말레이시아나 북한,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몽골의 경우, 사형 관련 자료가 여전히 국가기밀로 취급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 사형 관련 통계를 문서에 인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중국에서 처형당한 것으로 추측되는 수천 명을 제외하고,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최소 51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나라별로는 아프가니스탄(2), 방글라데시(5+), 중국(+), 말레이시아(+), 북한(30+), 대만(5)과 베트남(5+) 등 7개 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2011년 아시아 · 태평양 지역 18개 국가에서 최소 833건의 사형선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49+), 중국(+), 인도(110+), 인도네시아(6+), 일본(10), 말레이시아(108+), 몽골(+), 미얀마(33+), 북한(+), 파키스탄(313+), 파푸아뉴기니(5), 싱가포르(5+), 한국(1), 스리랑카(106), 대만(16), 태국(40), 베트남 (23+)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가 지난 2011년 6월 20일 카불 외곽에 있는 풀에

차르키 교도소에서 두 명을 교수형으로 처형하는 것으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이 두 남성은 북부 와리지스탄 출신의 파키스탄인 자르아잠과 아프가니스탄 쿤나르지역 출신인 마테올라로서, 이들은 지난 2011년 2월 19일 아프가니스탄 동부에 있는 자랄라바드시(市) 카불은행 지점을 습격하는 과정에서 약 40명을 살해하고 78명을 부상당하게 한 죄로 기소됐다. 탈레반은 이것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은 2011년에 사형을 선고했으며, 연말 기준 최소 140명의 사형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월 21일, 헤라트, 카불, 마자르에샤리프 등 세개 도시에서 이란의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2011년 말 현재 대략 4,000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이란에서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년 **방글라데시**는 최소 5건의 사형을 집행했고, 최소 49건의 사형을 선고했다. 2011년 7월, 정부는 사형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 2011년 7월 11일 내각을 통과한 '인신매매 방지 및 철폐를 위한 법안'이 연말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인신매매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2011년 12월 26일에 방글라데시 내각은 사형을 확대하기 위한 두 번째 법안을 승인했다. 2011년 반테러법 개정안이 2012년 2월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방글라데시 내 반군 또는 테러집단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자금을 대는 행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중국이 전 세계 사형 집행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도 중국 당국은 중국의 사형 현황을 은폐하고 비밀로 취급했으며, 2007년 이후 사형을 상당히 줄여 왔다는 중국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를 방해하기도 했다. 사형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국영 언론사들이 유명한 사건 몇 개를 다루자, 2011년 중국에서 치열한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토론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 관계가 충분하지 못했다.

2011년에 중국 정부는 13개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는데, 어차피 사형이 거의 집행되지 않는 공무원이나 기업의 부정행위 등이었다. 그러나 그 외 마약 밀매나 부정부패 등 여러비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유지했다. 또한 장기를 기증하도록 타인을 강제하거나 속이는 행위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사형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제는 이런 범죄가 의도적인 상해 혹은 살인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짜 마약이나 독성 혹은 유해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여지도 넓혔다.

중국에서는 2011년에도 사형선고를 받을 상황에 처한 이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 전까지 무죄로 인정받지 못하며 스스로 이를 증명해야 하며, 경찰이 고문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를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 법에 의하면, 사형수는 행정부에 감형 혹은 사면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 여러 절차상 문제 때문에 수 천 명이 임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다.

첸 뤼우, 상 지홍, 양 홍이 등 3명은 2009년 11월 12일 허베이 지방고등인민법원의 면소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세 사람이 2011년 11월 4일 1심법원인 랑팡시 중등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나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2011년 11월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법학 세미나의 연사로 선 첸 뤼우는²⁹ 중국의 경찰조사와 사형수 감육을 직접 겪어본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뤼우는 2001년 구금된 첫 날부터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폐전화기의 구리선을 감고, 전화기를 가동시켜 전류가 전선을 타고 흐르게 했다는 것이다. 뤼우는 교도관들이 계속해서 그를 흔들면서 자백을 받아내려 했다고 회상했다.

헤이룽장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첸 뤼우는 법정에서 서서 그간 고문당한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 위에서 설명한 전화기 선을 이용한 것 외에도 전류가 흐르는 곤봉으로 성기에 충격을 주고, 고춧가루 탄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비닐봉지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라이터로 발바닥에 화상을 입히고, 펜치로 손가락을 집는 등의 고문이 가해졌다. 구금 기간 동안 첸 뤼우는 혀를 깨물어 자살을 시도했으며 병원에서 일곱 바늘을 꼬면 뒤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이상 계속되는 고문 끝에 첸 뤼우는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이 뤼우의 손을 잡고 진술서에 서명하게 했을 때 고의로 성의 한자를 약간 다르게 표기했는데, '만약 내가 정말 죽더라도 대법원이 내 서명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수사해 줄 지도 모른다' 는 실낱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내 성을 치욕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하지 않는 범죄로 외국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일도 지속되고 있다. 한 파키스탄 남성인 시예드 자히드 후사인 샤는 2011년 9월 21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친 후 독극물 주사형으로 처형됐다. 샤는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마약밀매로 상하이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샤의 가족은 샤가 구속 중일 때 영사관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구하지 못했으며, 파키스탄의 유사프라자 길라니 총리와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 파키스탄의 인권자문관은 파키스탄 대통령에게 이 사안에 개입하여 중국 당국이 형 집행을 연기하도록 요청하라 권고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게 말했다.

2011년, 중국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작성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여론수렴을 위해 회람된 개정안은 사형 대상 범죄의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절차를 향상시키는 조항과 최종심리절차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새로 삽입된 120조)에 따르면, 모든 혐의자에 대한 신문 과정을 녹음 혹은 녹화할 수 있으며, 사형 혹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의 경우 모든 과정을 반드시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한다. 또한 2심 재판의 경우, 모든 사형 대상 범죄 사건 또는 검찰 및 변호인이 사실관계나 증거를 둘러싸고 서로 이견이 있는 기타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거쳐야 한다(개정된 222조). 최고인민법원에 의한 최종 사형 승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최고인민법원의 권한을 넓혀 사형 선고를 승인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하급법원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된 238조). 또한 모든 사건에 대해 자체적인 심리를 거쳐 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티셴 유 가이판). 또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을 심문해야 하며 변호사의 요청이 있을 시 변호사의 주장도 들어야 한다(개정된 239조).

위 개정안은 한계가 있긴 하나, 국제기준에 따라 가장 엄격한 안전장치를 갖춰야 할 사형 대상 범죄의 소송 절차를 보강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2012년 3월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자 회의에 상정되면 현안대로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최종심리절차에 대한 개정안은 3심을 도입하는 것과 흡사하며 이를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산물 유통업자인 령 구오관은 2011년 11월 23일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밀수와 마약 밀매에 관여한 범죄조직을 이끌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그는 랴오닝성의 단둥시 중등법원에서 2009년 12월 16일 사형이 선고됐다. 령 구오관의 유죄 선고는 불공정한 재판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의 자백과 증인들의 증언에 기반한 것이었는데, 증인들은 이후 증언을 철회하거나 구오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령 구오관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으며 그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령 구오관은 2009년 1월 19일 구금된 이후 2009년 3월 24일 카메라 앞에서 자백 진술서를 낭독하라고 시키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고문의 대상이 되었다고 증언했다. 이 영상은 심문 과정 중 처음으로 케이스파일에 포함된 공식 자료였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증인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물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2009년 령 구오관 사건의 1심법원인 단둥시 중등법원은 고문 의혹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2010년 8월 23일 랴오닝성 검찰은 령 구오관의 몸에 상처와 흉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같은 부상을 수사팀이 가했다고 결론지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령 구오관은 누구에게 불만을 제기하든 결국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단둥시 검찰이므로 이 결정은 변경될 수 없다는 말도 들었다.

령 구오관은 랴오닝 고등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그는 머리와 손목, 다리 등에 난 상처를 보여주며 고문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측은 증인 56명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그 중 단 3명만을 받아들였다. 2011년 5월 6일, 랴오닝 법원은 령 구오관 사건에 대해 "사실 불명확"과 "증거 불충분"의 이유를 들어 중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단둥시 중등법원에서 재심을 받은 끝에 령은 11월 23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인도는 7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나, 2011년에 최소 110명에게 사형을 선고해 2011년 말 기준 사형수가 400 ~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5월 말, 프라딕하 파틸 대통령은 데벤더 팔 싱블라르와 마헨드라나스 다스의 사면 청원을 거부했다. 사면 청원은 인도 사형수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항소 절차이다. 블라르르의 지난 1993년 델리에서 9명의 생명을 앗아간 테러 공격을 음모한 죄로 2001년에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다스는 1996년 아삼주(州)구와하티에서 살인을 저지른 죄로 1997년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8월에도 대통령은 라지브 간디 전 총리 암살에 연루된 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세 사형수의 사면 청원을 거부했다. 무루간, 산탄과 ('페라리발란'이란 예명을 가진) 아루부, 이렇게 세 명은 1998년 1월 특수반테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1999년 5월 인도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사면 요청에 대한 판단이 늦어진 점에 대해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고, 사형수로서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에 대한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자, 법원은 이 세 명에 대한 형 집행을 유예했다.

2011년 6월 16일, 뭄바이 고등법원은 1985년에 제정된 '중독성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법률' 31-A조에 따른 의무적 사형 선고는 인도 헌법 제2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으며, 이를 개정하여 형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판사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판결이 나온 후, 중독성 마약을 생산, 제조, 소지, 운반, 수입 혹은 수출하거나, 인도 영토를 통과하는 행위, 그리고 이런 행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판사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사형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12월, 인도 의회는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을 파괴하여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테러 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달, 인도 서부에 있는 구자랏주(州)는 독성 알코올을 생산하고 판매한 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효시켰다.

인도네시아는 연속 3년 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2011년에 최소 6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으며, 2011년 말 기준 사형수는 1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작년에 해외에서 사형수로 수감 중인 인도네시아 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 테스크포스트를 구성했다. 2011년 7월,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인력·이주부 장관(Manpower and Transmigration Minister)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외 사형수로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을 사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인도네시아인이 이주노동자로 정착한 말레이시아 및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11월 3일,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보호 테스크포스의 험프리 R. 제마트 대변인이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5명의 인도네시아인이 사형수로 수감 중이며, 말레이시아에는 148명 그리고 중국에 28명 등 총 221명의 인도네시아인이 해외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인도네시아 일간지 자카르타글로브 보도에 따르면, 테스크포스의 마프터 바시유니 의장은 테스크포스트가 2011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명, 말레이시아에서 14명, 중국에서 11명 그리고 이란에서 한 명 등 이

주노동자 출신 사형수 총 37명을 석방시켰다고 말했다.³⁰

19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이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사형반대론자인 사츠키 에다가 2011년 1월 14일 법무상으로 임명됐다가 9월 2일에 단행된 개각으로 히데오 히라오카 법무상으로 교체됐다. 2011년 두 법무상 모두 각자의 임기 동안 사형집행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정부와 법무부 내에서 사형집행영장에 서명하라는 상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10월 말, 오사무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의회 위원회 회의에서 히라오카 법무상에게 사형 집행 승인 권한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10월 7일,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카가와현 타카마츠에서 개최한 연례 인권 회의 말미에 사형 반대 선언문을 채택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즉각 "전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011년에 추가 10건의 사형을 선고했으며, 2011년 말 현재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총 1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살인죄로 1968년에 사형을 선고 받고 사형수로 지내 온 하카마다 이와오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479조에 명시된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정신이상일 경우, 법무장관의 명령 하에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규정에 따라 하카마다는 사형수 신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카마다가 재심을 청구하자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살인을 저지를 당시 하카마다가 입었다고 하는 피 묻은 옷에 대한 DNA 검사를 승인했다. 옷에 묻은 피가 살인 피해자의 피임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된 DNA 검사 결과가 2011년 12월 23일에 공개됐는데,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초에 추가 DNA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2011년 1월 27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라오스**가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2차 이행 보고서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2011년 2월 4일에 채택한 최종견해를 통해 라오스의 국내법이 아동에 대한 사형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성년자의 사법처리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0호(2007년)를 라오스가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 일반논평은 아동권리협약 37조 a항에 근거해³¹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이었을 경우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해선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³²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 **말레이시아**에서 몇 명이 처형당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최소 108건의 사형이 선고됐다는 사실은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중 3분의 2 정도가 마약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이었고, 3분의 1은 외국인이었다. 2011년 4월 2일 히삼무딘 후세인 내무장관은 의회 질의에 답변하면서 말레이시아 내 사형수는 696명이며, 1960년 이래 총 441명이 사형당했다고 밝혔다.³³ 말레이시아 당국은 싱가포르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말레이시아인 용 브이콩의 감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몰디브**는 2011년에 단 한 건의 사형도 선고하지 않았다. 2011년 4월 18일, 몰디브 의회는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거나 확정할 경우 사형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며, 대통령이 해당 사형수를 사면해줄 수 없다.

몽골은 사형을 여전히 국가 기밀로 취급하고 있어서 2011년에 선고된 사형 건수나 연말 기준 사형수 숫자 등을 모두 공개하고 않고 있다. 몽골 대법원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게 밝혔다. 차이하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지난 2010년 1월에 약속한 대로 사면을 요청하는 사형수를 감형시켜주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몽골 의회는 아직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동의안에 표결하지 않은 상태였다.³⁴

2011년 3월 21일과 22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몽골의 자유권규약 준수 여부에 대해 몽골 정부가 제출한 5차 정기보고서를 검토했다.³⁵ 3월 30일에 채택한 최종견해를 통해 위원회는 사형 집행이 중단된 것은 환영하지만 사형이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몽골이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 사형을 법적으로도 폐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 할 것을 요청했다.³⁶ 2011년 5월, 몽골 의회는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가 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사형을 법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도 이 결의안에 포함시켰다.³⁷

2011년에 **미얀마**는 최소 33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16일, 대통령령 28/2011호에 따라 16명의 여성을 포함하여 총 657명이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이 중에는 중국인이 6명, 말레이시아인 1명, 싱가포르인이 5명, 대만인 1명과 태국인 2명 등 외국인 1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1년 말 현재, 미얀마에는 2명의 여성을 포함하여 최소 30명의 사형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얀마는 2011년 1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³⁸ 사형제도와 관련해 미얀마는 1988년 이래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사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미얀마 대표단은 행정부 및 관련 부처가 여러 인권 관련 조약을 비준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시사하면서, 다만 최종 결정은 입법부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얀마가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도 검토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³⁹

나우루는 2011년 1월 24일에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나우루 대표단은 지난 2004년부터 정부가 헌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나우루 헌법 4조 1항은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 검토 작업을 거치면서 나우루는 두 개의 법안을 만들었는데, 2009년 의회가 이 두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두 법안 중 하나는 헌법에서 사형을 삭제하기 위한 조항을 담고 있으며, 국민투표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대표단은 개정안이 2010년 2월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으며, 의회 상임위원회인 헌법검토위원회가 국민투표 부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우루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나우루인들이 개정안 내용 자체에 부정적이었다기보다 상정된 개정안이 복잡하고 조항이 많아 부결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또한 국내법은 사형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나우루가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서명국이기에 때문에 의회가 사형을 도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나우루인이거나 국제사회 모두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⁴⁰ 정례인권검토 후에 나우루는 자유권규약과 두 개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사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일겠다는 서면 답변서를 보내왔다.⁴¹

북한의 경우, 2011년에 언론이 다룬 사형 선고 및 집행 건수가 줄어든 듯 했으나 최소 30명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수치는 북한의 실제 사형집행 건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헌법 및 기타 법률의 다수 조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진행되는 그 어떠한 재판도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이나 적법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

2011년 1월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이양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위부가 200명 이상의 관료를 억류했으며, 이 중 일부는 처형당했을 우려가 있다. 2011년 7월, 국제엠네스티는 북한 당국이 남북간 대화에 참여했거나 이를 주도한 관료 30명을 총살형에 처하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는 확인되지 않는 보고를 접수했다. 또한 지난 해 동안 정치 수용소 등 여러 곳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형법은 공개 처형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북한에서 "사법적"인 처형 외에도 "초법적(extra-judicial)"인 처형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1년 3월 10일,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경제

관련 범죄로 37명이 처형됐다는 보고에 대해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파키스탄은 연속 3년 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긴 하나, 2011년에 최소 31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작년에 사형을 선고 받은 죄수 중 절반 이상이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마약 밀매, 강간과 몸값을 목표로 한 납치와 같은 범죄였다. 3명이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런 죄목으로 실제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말 기준, 파키스탄에는 사형수가 최소 8,300명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 8월 12일, 반(反)테러 법원은 준군사조직인 레인저스 소속 대원인 사히드 자파르에게 6월 카라치에서 사르파라즈 샤를 총으로 쏘 살해한 죄로 교수형을 선고했다. 9월 21일에는 펀자브 지역 구즈란 알라 반테러 법원이 십대 형제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22명 중 7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 반테러 법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적법절차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작년 **파푸아뉴기니**는 5건의 새로운 사형을 선고했다. 2011년 5월 13일, 파푸아뉴기니는 자국 인권 현황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사형제도와 관련된 견해 및 권고에 대해 파푸아뉴기니 대표단은 사형제도는 국내 법률에 여전히 존재하며, 의회가 관련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만 사형의 사용이 중단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대표단은 또한 법원이 사형을 계속 선고하고 있긴 했지만, 항소를 제기한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형을 감경시켰다고 밝혔다. 법원이 사형을 계속 선고하고 있기에 사형에 대한 모라토리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사형제도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이며, 파푸아뉴기니 내에서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⁴² 파푸아뉴기니는 9월 30일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사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⁴³

국제앰네스티는 **싱가포르**에서 사형이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최소 5건의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외국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의무 사형 선고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마약 관련 범죄 등에 적용된다.

2011년 5월 6일, 싱가포르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싱가포르는 국제인권기준을 무시하면서 의무 사형 선고를 포함해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 대표단은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하며, 항상 적법절차를 거치고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형 집행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이 싱가포르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사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할 책임을 지지않고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 사실을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또 사형에 대한 통계 및 기타 사실관계를 공개하라는 권고들에 대해서 이미 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싱가포르는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즉각 선언하고, 자유권규약과 동 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과거 집행되거나 법원이 선고한 사형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의무 사형 선고 관련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형법 및 마약남용방지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는 거부했다.⁴⁴

2011년 9월 9일 사형수인 라마링감 라빈스람이 싱가포르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공정재판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같은 사건에서 다른 피의자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기에 사형을 선고 받은 것은 위헌이라는 요지에서였다. 하지만 2012년 1월 12일 해당 사건의 항소가 기각됐다.

2011년 **한국**에서는 사형집행이 없었다. 9월 8일,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형집행중단 5,000일을 기념했다. 연말 기준,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60명이며, 2011년에 한 건의 사형이 선고됐다. 사형집행중단 5,000일인 9월 8일, 네 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형폐지특별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

구하며 국회 내에서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다. 2011년 말,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었다.

국제앰네스티가 확보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2011년에 106건의 사형을 선고했으며, 연말 기준 362명의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다. 2011년 12월 말, 스리랑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사형을 폐지하라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A. 디사나야케 교정개혁재활부(Ministry of Prison Reforms and Rehabilitation) 장관은 교정당국이 재무부 관리 부서에 교수형 집행자 채용 승인을 요청했으며, 이미 지원자가 여러 명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사나야케 장관에 의하면, 12월 말 현재 사형수는 약 750명이다.

2011년 3월 4일, **대만**은 각각 다른 범죄로 1988년에서 2005년 사이 사형을 선고 받은 5명에 대한 총살형에 처했다. 지난 3월 1일 대만 의회 공청회에서는 쟁용푸 법무부장이 11개월 간의 사형 집행 유예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국은 형을 집행하기 전 5명의 사형수 본인이나 가족, 변호사에서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번 처형은 마잉주 총통이 지난 1997년에 무고한 사람을 처형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한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 당시 사형당한 사람은 공군 사병인 치앙 쿠오칭이었는데, 2011년 1월 말 다른 사람이 체포되어 범죄를 자백했다.

지난 해 대만은 새롭게 1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연말 기준 사형수가 5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권규약은 사형수가 사면이나 감형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대만 사형수들은 2011년에도 여전히 이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2009년 대만 정부는 대만의 모든 법과 규정이 국제협약에 부합되도록 2011년 12월까지 이를 정비하는 법안을 제정해 자유권규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1년에도 불공정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었다.

2011년 4월 4일, 대만 의회는 군 복무 위반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16조와 17조를 개정해 선고 가능한 형벌의 종류 중 사형을 삭제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 복무 중 집단적으로 무기를 소지하고 타인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한 최고 형량은 이제 종신형이다. 또한 납치, 총기나 화약 밀매, 병역 이행 방해나 지폐 위조 범죄에 대해 선고 가능한 범죄의 종류에서도 사형을 삭제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최고 사법 기관인 사법원은 2011년 9월 형사소송법에 대한 개정안 작성을 완료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린 후에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대만의 **치우 호순**은 1989년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이 선고받았다. 2011년 8월 25일, 대만 검찰총장이 특별 재심요청을 거부하면서 그는 즉각적인 사형 집행 위기에 처해 있다

1988년 구금된 치우 호순은 루 청과 코 흥 유란을 납치, 살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았다. 치우 호순만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공동피고인 11명은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감옥에서 숨진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형기가 끝난 상태다.

치우 호순과 공동피고인들은 구금된 뒤 4개월간 독방에 갇혔으며 자백하라고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후에 자백 내용을 철회했다.

1994년 공식 수사가 시작되고, 루 청 납치 및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2명과 경찰 10명은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낸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경찰은 2003년 다른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 자신이 루 청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치우 호순이 구금되어 있던 23년 동안, 이 사건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11번이나 오갔다. 법원은 그의 자백

이 고문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자백을 증거에서 제외하지 못했고, 다른 사형수가 루 침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태국은 2년 연속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태국 외교부는 2011년에 40건의 사형선고가 있었으며, 이 중 9건은 마약 관련 범죄였다고 밝혔다. 또 당국은 2011년 말 현재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남성이 81명, 여성이 6명이라 밝혔다. 남성 중 49명과 여성 6명 모두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2011년 말 현재 태국에는 최소 610명의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다. 태국 정부는 2009 ~ 2013년 제2차 국가인권계획을 통해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으나 2011년에 진전사항은 없었다. 2011년 2월, 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처음으로 사형반대 연대체를 출범시켰다.

2011년 10월 5일, 태국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사형제도와 관련, 태국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으며, 임산부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더 이상 사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권이사회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국가인권계획에 명시한 대로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마약 밀매 관련 범죄에 사형을 선고하는 관례를 재검토하고, 사형을 감형하고, 사형을 분명히 폐지한다는 목표 하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라는 등의 권고를 했으며, 대표단은 이를 검토한 후 2012년 3월 제19차 인권이사회 회의까지 답변하기로 했다.⁴⁵

베트남은 2011년도에도 사형에 관한 수치를 국가 기밀로 분류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연중 최소 5건의 사형 집행과 23건의 사형 선고가 있었으며, 대부분 마약 관련 범죄에 적용됐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베트남 신문 탄니엔의 2011년 9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公安부 고위급 관료인 카오 응옥 오안이 베트남에서 매년 약 100명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 신문 2011년 11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형사판결집행 및 사법지원부(Department of Execution of Criminal Judgments and Judicial Support) 부국장인 호 탄 딘 소장은 베트남 전역에 약 360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주로 호치민과 하노이, 응에안과 손라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2011년도도 베트남은 계속 사형을 집행했다.

2010년에 제정되어 2011년 7월 발효 예정이었던 형사판결 집행에 관한 법률이 11월로 연기됐고, 다시 2012년 초로 연기됐다. 이 법은 사형 집행 방법으로서 총살형을 독극물 주사형으로 대체하고, 처음으로 사형수의 유가족이나 법적 대리인이 사형 후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준다.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사형수 유가족이 시신 운반 비용을 지불하고 공공 질서와 환경 위생을 지켜야 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또한 유가족이 시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시신 매장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11월 고위 관료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말 하노이시(市)와 호치민시(市), 그리고 손라, 응에안과 닥락 지역에 총 5개의 독극물 주입 시설을 만들고, 그 동안 집행인을 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도 추가 세 개의 독극물 주입 시설을 만들 계획이며, 점차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인도적 살인 방법은 없다

베트남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는 독극물 주사에는 마취용 티오펜탈 나트륨 5g, 근육 이완용 브롬화 팬크로늄 100g, 심장박동을 정지시키는 데 사용되는 염화칼륨 100g이 들어있다.

베트남 국회 사법위원회의 레 티 투 바 위원장은 "새로 도입한 제도는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고 더 인도적이며 사형수와 그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사형집행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사형수의 시신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다" 고 밝혔다고 한다.⁴⁶ 다른 정부 고관들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발표한 보고서 <독극물 주사에 의한 사형 집행: 국가가 자행한 독살의 25년 역사⁴⁷>에서 독극물 주사가 교수형, 참수형, 총살형, 가스실이나 전기의자형 등 "전통적인" 사형 집행 방식에 비해 "인도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보고서는 치사 주사로 사형집행에 실패한 일련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한 시간 이상 계속되는 죽음의 고통을 견뎌야 했던 사형수들도 있고, 경련을 일으키거나 피부에 화상을 입는 경우, 또는 정맥을 찾기 위해 유헤 낭자한 '절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치사 주사의 의학적 '효율성'에 대해서도 이같이 약물을 혼합하면 사형수가 '화학적 구속'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화학적 구속' 상태란 의식은 남아있으나 신체가 완전히 마비돼 사망 직전의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을 겪는 동안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2011년 베트남 신문인 투오이트레 지에서 베트남의 사형제도에 대한 두 편짜리 기획 기사⁴⁸를 실으면서 베트남 사형제도의 진정한 현실을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가 생기기도 했다. 기사는 검찰 및 경찰, 목격자, 전 사형수, 변호사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형이 집행되는 마지막 순간의 감정과 비밀스러운 등을 묘사했다. 또한 사형이 교도관이나 사형수 가족, 집행장 인근 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도 다뤘다.

여러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죄수가 사형을 선고 받으면 즉시 다른 수감자로부터 분리된 사형수만의 별도 교도소 내 구역으로 옮겨진다. 사형수는 "살아있는 귀신"이라 불리며, 이들의 수감실은 더 좁고, 양쪽 끝에 시멘트 침대가 하나씩 있고 침대 끝에는 족쇄가 있다. 수감실은 보통 2인 용인데, 한 명만 있는 경우도 있다. 사형수는 평생 다른 사형수를 만나지 못한 채 수감실 사이 벽을 두고 서로 대화를 하거나 체스를 두곤 한다. 사형수나 가족, 변호사는 사전에 형 집행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다.

최종 항소가 기각되면, 어느 날 새벽 3시에 교도관이 와서 사형수를 깨우고, 형 집행이 임박했다고 사형수에게 알린다. 사형수는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후, 수프와 물 한 잔으로 이뤄진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된다. 원하면 담배를 한 대 피울 수 있다. 또 가족에게 남길 편지를 쓰거나 메시지를 녹음할 수 있다. 그런 후 교도관들은 사형수를 사형수 구역 밖으로 호송하여 지문 날인과 같은 마지막 절차를 담당하는 사형집행위원회에 인도한다.

2011년 말까지 베트남에서 사형은 총살형이었으며, 집행부대는 보통 5명으로 구성된다. 죄수는 목재로 된 사형대에 세워지며 사형집행위원회 위원장이 판결문을 낭독한다. 시신은 총살형 집행장에 묻힌다. 각 묘를 표시하는 나무판에는 사형수의 이름과 고향, 나이, 사망날짜가 적혀 있다. 유가족들은 장례를 위해 시신을 인도받을 수가 없다.

2011년에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ADPAN)**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조직의 포괄 범위를 더욱 넓혀 이제 24개국에 회원을 보유하게 됐다.⁴⁹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가 발간한 첫 보고서는 아시아 여러 나라가 어떻게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을 법률상 또는 관행상 위배하는지, 어떻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은 후 처형당하는 지를 묘사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과 파키스탄의 캠페인 사례들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와 캠페인 사례를 통해 ADPAN은 완전한 사형 폐지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관련 법이나 정책, 관행을 바꿔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강제 자백과 차별로부터의 보호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재판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유럽 및 구소련 국가 중 벨라루스만 유일하게 2011년에 사형을 집행했다. 7월 14일과 19일 사이, 2009년 무장강도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28세 안드레이 버르두카와 또 다른 남성이 처형당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이나 그 직후에도 두 남성의 가족은 형 집행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다. 안드레이 버르두카의 어머니는 아들을 면회하려고 교도소에 온 후에야 아들이 이미 총살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버르두카의 소지품을 인계 받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이들의 사건을 재검토하기 위해 사형 집행 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은 집행됐다.

11월 30일, 드즈미트리 카마발라우(25세)와 올랏즈슬라우 카바루오우(26세)는 4월 11일 민스크 지하철역 폭파 사건 등 벨라루스에서 여러 건의 폭탄 공격을 가한 혐의로 1심 재판을 진행한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미달하고 오점이 많은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또한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것 외에 어떠한 항소 절차도 제기할 수 없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이 두 남성이 자백을 강요 받았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들이 민스크 폭발 사건에 연루됐다는 과학적 증거도 없었고, 이들에게서 폭발물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 카바루오우는 자백을 철회했다. 그의 어머니는 두 남성 모두 신문 과정에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 11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벨라루스 사형수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몇몇 사형수는 기본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보장받지 못하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명했다.⁵⁰ 위원회는 특히 사형수의 가족이 사형 집행 후 몇 일 혹은 몇 주가 지나서야 처형 사실을 통보 받는 등 사형 집행 과정이 비밀스럽고 임의적이라는 점, 사형수 가족이 사형수를 마지막으로 면회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 처형당한 사형수의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시신을 묻은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 점 등이 특히 우려된다고 했다. 위원회는 사형수의 구금 환경을 개선하고, 고문방지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보호 장치를 사형수에게 보장하고, 처형을 둘러싼 비밀주의와 임의성을 개선함으로써 가족들이 불확실성과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벨라루스에 촉구했다.

12월 9일, 국제앰네스티와 벨라루스 인권단체인 비아스나, 벨라루스헬싱키위원회 대표단은 전 세계 25만 명의 서명이 담긴 벨라루스 사형 중단 탄원서를 벨라루스의 루카센카 대통령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지난 2003년 12월 19일에 사형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언한 카자흐스탄은 2011년에도 이를 지켰다. 2011년 3월 28일, 대통령 직속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에 사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으며, 카자흐스탄이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고 권고했다. 2011년 7월, 자유권위원회는 카자흐스탄 헌법 상 여전히 사형이 허용되는 여러 특수한 상황들 간에 일관성이 없고, 형법은 더 광범위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카자흐스탄이 사형을 폐지하고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⁵¹

2011년 3월, 자유권위원회는 개별 제소건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키르기즈스탄이 사형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자유권규약 제1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형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국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키르기즈스탄은 해당 사건에서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⁵²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해,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2001년에 선고된 한 사형은 공정재판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자유권규약 제6조를 위반했다고 했다.⁵³

10월 13일, **라트비아** 의회는 모든 경우에서 사형을 폐지하도록 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유럽인권협약) 제13의정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11월 말에는 2012년 1월1일부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완전한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 이전에 라트비아는 일반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폐지했다.

러시아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선언한 사형에 대한 무기한 모라토리엄을 2011년에도 지켰다. 그러나 사형폐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러시아는 사형폐지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6의정서에 서명은 했으나 비준은 하지 않은 유일한 유럽평의회 회원국이다. 또 사형폐지국인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하면 모든 경우에서 사형을 폐지하도록 하는 유럽인권협약 제13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2011년 4월 유럽평의회 의원총회에서 러시아 상원 법률사법위원회의 니콜라이 샹크레인 부의장은 이제 사형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으며, 멀지 않은 미래에 러시아가 제6의정서를 비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0년 모스크바 지하철 폭탄테러 사건 및 2011년 1월 24일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공항 폭탄테러 사건 이후 테러행위를 저지른 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하라는 대중적 여론이 높아졌다. 3월에 자유권위원회는 러시아가 지난 1995년에 공정재판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당시 고문 혐의가 제기됐으나 이를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자유권규약 제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⁵⁴

타지키스탄은 2011년에 사형을 선고하지도 집행하지도 않아 2004년에 수립한 공식 모라토리엄을 지켜나갔다. 중앙아시아에서는 타지키스탄만이 유일하게 일반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이다. 2011년 10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으면서 타지키스탄 대표단은 2010년 대통령령으로 관련 부처 간 실무그룹을 만들었으며 이 실무그룹이 사형 폐지의 사회적, 법적 사항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11년 8월에 제정된 "사면법"은 애초에 사형을 선고 받은 죄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유럽평의회의 유럽인권재판소에 현재 개별 사건 두 건이 계류 중이다. 알바니아와 폴란드가 몇몇 죄수를 당시 사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인도하는데 협력함으로써 유럽인권협약이 명시한 생명권을 침해한 사건이다.⁵⁵ 알바니아계 미국인인 알미르 라포는 2010년 알바니아로부터 미국으로 인도됐으며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그는 여러 중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뉴욕 연방법원의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인데, 검찰이 애초 적용하려던 혐의는 사형 대상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으나 나중에 그 혐의는 거두어졌다. 2011년 5월 6일, 압드 알라힘 알나쉬리는 폴란드 비밀 교도소에 구금 중일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자신이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로 보내질 때 폴란드 당국이 이에 협조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알나쉬리는 미국 군사위원회 재판을 받을 예정이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2011년 4월 14일, 유럽평의회 의원총회는 유럽평의회 회원국 및 참관국에서의 사형제도에 관한 결의 1807호(2011)를 채택하면서, 미국, 일본, 벨라루스가 사형폐지를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11년 12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사형,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 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거래에 관한 유럽연합 각료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 (EC) 1236/2005)의 개정안을 발효시켰다. 이 규정으로 이제 바르비투르산염 마취제를 수출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의약품을 유럽에서 사형에 사용할 수 있는 나라로 수출하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안내서를 발간하여 그런 물품이 사형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알리고 있다. 유럽의회는 사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캐서린 애쉬턴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011년 한해 동안 사형에 관해 여러 차례 성명을 냈다. 유럽의회와 애쉬턴 대표는 무엇보다 이란, 바레인과 가자 지구의 사형제도 문제와 관타나모

수용소와 인도에서 군사위원회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튀니지에서 시작해 이집트와 리비아, 예멘, 바레인, 시리아, 이라크 외 여러 곳으로 번진 북아프리카의 민중 봉기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정치 지형을 급격히 바꿔놓았다. 튀니지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 장기 집권한 통치자들이 권력을 잃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사형제도에 있어서 진전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리비아와 시리아, 예멘 등에서 폭력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2011년 이 지역의 사형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들었다. 2011년 리비아 사형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사형이 선고됐다는 보고도 없다. 그러나 초법적 처형, 고문과 자의적인 구금에 대한 보고는 많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 최소 558명이 이집트(1+), 이란(360+), 이라크(68+),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자 지구에서 3), 사우디아라비아(82+),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1)와 예멘(41+) 8개 나라에서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랍에미리트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또 2011년에 최소 750건의 사형이 선고되었는데, 국가별로는 알제리(51+), 바레인(5), 이집트(123+), 이란(156+), 이라크(291+), 요르단(15+), 쿠웨이트(17+), 레바논(8), 모로코/서사하라(5), 팔레스타인 자치정부(5+, 가자지구 4, 서안지구 1), 카타르(3+), 사우디아라비아(9+), 시리아(+), 아랍에미리트(31+), 예멘(29+) 등 15개국이 사형을 선고 했다.

알제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모로코/서사하라 및 카타르 당국이 사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은 하지 않았다. 바레인도 2011년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2010년에 비해 작년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나라 수가 약간 줄어 2011년 총 사형 선고 건수는 3분의 1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확인된 사형집행 건수는 약 50% 증가했는데, 이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형집행이 많았기 때문이다. 레바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튀니지의 경우 이전에 비해 사형을 덜 사용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19개국 중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4개국의 사형집행 건수는 전체 기록된 사형집행 총합의 무려 99%나 된다.

이 지역에서는 불공정한 재판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군사법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하지 않는 마약 관련 범죄나 반테러법 위반 등의 모호하게 정의되어있는 정치 범죄에도 사형이 선고되고 있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2월, 19년 간의 비상사태가 해제된 **알제리**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며,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임 가능성이 높다. 알제리는 1993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다. 그러나 2011년 최소 51건의 사형을 선고했는데, 대부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러 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선고됐다.

2011년 **바레인**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나, 2월 14일을 시작으로 몇 개월 간 지속된 시위 도중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5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정부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해 온 바 있다. 바레인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은 적어도 10년 만에 이 5명이 처음이다.

바레인에서 시위와 관련해 약 2,500명이 체포됐으며, 대다수가 비상사태 때 세워진 군사법원인 국가안전법원에서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 지난 6월에 비상사태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법원은 10월까지 운영됐다.

5건의 사형 중 4건은 민간인 시위대에 선고된 것이었다. 이 네 명은 국가안전법원의 비공개 재판에서 1심 재판을 받았으며, 시위 중 두 명의 경찰을 살해한 혐의로 4월 28일 총살형을 선고 받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5월 22일, 바레인의 국가안전항소법원은 알리 압둘라 하산 알산키스와 압델아지즈 압델리드하 이브라힘 후사인 두 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형을 종신형으로 감경시켰다. 사형이 확정된 두 명은 민간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2012년으로 연기됐다.⁵⁶

5명 중 나머지 한 명인 알리 유세프 압둘와하브 알타월은 경찰관 한 명을 살해하고 시위가 한창일 때 시트라 섬에서 "테러행위를 저지를 목적"으로 불법 모임에 가담한 혐의로 9월에 사형을 선고 받았다. 연말 현재 알타월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다. 2011년 2월과 3월 바레인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과 그 사건의 영향을 조사하고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레인 독립 진상조사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6조가 사형폐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과 국가안전법원이 진행한 재판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위원회가 확인한 우려사항들을 바탕으로 당시 사건으로 선고된 사형은 감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집트에서는 최소 한 명이 처형 당하고 최소 123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 1월 16일 모하메드 아흐메드 후세인은 지난 2010년 1월 달리는 차 안에서 총을 쏘 콧트 기독교인 6명과 무슬림 경찰 1명을 죽인 혐의로 비상 국가안보 최고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후세인은 세계 사형반대의 날이자 이집트 당국이 카이로에서 열린 콧트 기독교인 시위를 유혈 진압한 바로 다음 날인 2011년 10월 10일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애초 사형을 선고하기 전이나 집행하기 전에 분파 간 폭력사태가 벌어졌다는 측면에서, 당시 사형집행은 대중의 분노를 억제하기 위한 당국의 시도였을 수도 있다. 5월 초 임바바에서 분파 간 폭력 사태가 발생한 후, 법무장관은 "집단폭력과 분파주의적 선동"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중 시위가 일자 지난 30년 간 이집트를 통치한 호스니 무바라크는 2월 11일 사퇴를 선언했다. 8월 3일, 봉기 진행 중 시위대를 살해하거나 부상 입힌 죄와 부정부패로 기소된 호스니 무바라크와 하비브 엘 아들리 전 내무부 장관, 네 명의 참모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⁵⁷

군사최고위원회(SCAF)는 집권 후 1981년부터 지속된 비상사태를 유지했으며,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군사최고위원회는 이집트에서 "집단폭력"이나 강간, 분파주의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사형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미 넓은 사형 대상 범주의 범위를 더욱 넓혔다. 그리고 2011년 3월 14일부로 발행한 명령을 통해 형법을 개정했다. 형법에 "홀리거니즘, 공포유발, 집단폭력"에 관한 두 개 조항이 삽입되어 만약 살인이 동반될 경우 이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4월 1일, 최고군사위원회는 강간 피해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강간범에게 사형을 선고하겠으며, 미성년 범죄자에게도 같은 처벌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군사최고위원회가 집권한 이후, 군사법원은 민간인에게도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후 사형을 선고했다. 현역 군인인 판사들은 독립적인 법원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나 효력 있는 항소를 제기할 권리 등 국제법이 명시한 안전장치를 보장하지 않았다. 군 사법당국은 2월에서 8월 사이에 군이 12,0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소 17명이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6월 17일 최종견해를 통해, 이집트에서 18세 미만일 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는 국내법 및 국제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⁵⁸ 군사최고위원회는 해당 피고인이 21세였다고 이후에 답변했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란은 중국을 제외하고 매년 수백 명을 처형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당국이 공식 인정하지 않은 사형집행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2011년에 이란은 전체적으로 사형집행 건수가 증가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중반부터 사형집행 건수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11년에는 더 확연하게 증가했다. 마약 관련 범죄로 매우 많은 사람이 사형당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인정했거나 공식 등록된 언론사를 통해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란에서 360 명이 공식적으로 처형당했다. 이 중 최소 네 명이 여성이었고,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사형수도 세 명 있었다. 그러나 실제 숫자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⁵⁹ 이란 내외 신뢰할 만한 정보원에 따르면, 2011년에 알려지긴 했으나 공식 확인되지는 않은 사형집행이 최소 274건이며, 이 중 최소 148건은 마쉬하드 지역의 바킬리바드 교도소에서 실시됐다. 이를 포함하면 총 634명이 처형당했다는 얘기이다. 또 2008년에 사법부 수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공개처형을 할 수 없다는 지침을 하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비해 거의 네 배인 최소 50명이 공개처형을 당했다.⁶⁰ 이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형 선고는 최소 156건인데, 실제 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당국은 사형수 숫자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개인들의 법적 지위가 몇 개월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확인되지 않는 사건도 많다. 이러한 정보의 부재는 가족이나 변호사들이 수감자를 거의 만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정부 여러 기관 간 혹은 지방과 중앙 정부 간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란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국제사회의 반응을 시험해보고자 혼선을 빚는 듯 할 때도 있다.

이란에서는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다. 최소한 세 명이 "남색(sodomy)"을 이유로, 또한 명은 "세상에 부정부패를 퍼트린 죄"와 이슬람에 대한 "배교"로 처형당했다. 또 한 사건에서는 기독교 목사인 유세프 나다르크하니가 "배교"로 교수형을 선고 받았다. 연말에 재심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었다. 2011년 1월 4일 새로운 마약퇴치법이 발효되면서 사형 대상 범죄의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가장 최근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특정 합성, 의약외 향정신성 약물을 30그램 이상을 밀매하거나 소지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고, 또 법에 명시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타인을 고용 혹은 모집했거나, 혹은 이 법에 명시된 범죄행위(중신형 선고 대상 범죄)를 조직, 금전적으로 지원, 투자했을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새로운 법이 명시하고 있는 총 17가지 사형 대상 범죄와 관련한 "범죄 단체 또는 조직의 수괴"에게는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범죄 단체나 조직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없다.

공식 및 비공식 정보를 모두 합하면 최소 488명이 2011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형당했는데, 이는 2011년 모든 범죄에 대한 총 사형집행(당국이 인정한 것과 인정받지 않은 처형)의 75%에 달한다.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바 있듯이 유사한 마약 관련 혐의로 최소 166명이 처형당했던 2009년에 비하면 3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빈민이나 차별 받는 소수민족, 아프간인과 같은 외국인 등 주변화된 집단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형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재 마약 관련 범죄로 약 4,000명의 아프간인이 사형수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아이들도 있다.

이란 활동가들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명목으로 정부 반대파를 처형할 수 있다며 공포감을 표출하고 있다.

2011년 1월 2일, 이란과 네덜란드 이중국적자인 **자라 바라미**는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1월 29일 에빈 교도소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개월 간 외부와 단절된 채 구금돼 항소할 권리조차 없었던 불공정한 재판에 따른 것이었다. 자라는 2009년 초 대선 논란에 관련해 벌어진 시위의 여파 속에서 체포돼 시위에 관여했다는 혐의와 금지된 반대파 단체와 접촉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판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유족들은 자라의 시신 돌려받지 못했으며, 지나치게 먼 곳에 매장되어 유족들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었다.

38세의 견습 트럭운전자 **모하마드 잔갈리**는 2008년 자신이 몰던 트럭에서 마약이 발견되면서 2011년 10월 10일 사형이 집행됐다. 잔갈리는 고문 끝에 정보가 마련한 '자백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잔갈리의 가족들은 교도소 측에서 8시간 이내에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니 보고 싶다면 지금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기 전에는 당국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잔갈리는 사형 집행 전까지도 트럭에 마약이 있는 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이란 당국은 여전히 정치수들을 처형하고 있으며, 소수자를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형을 활용하고 있다.

이란의 소수민족 쿠르드족 출신인 **호세인 케즈리**는 쿠르드 자유생명당(PJAK)에 가담해 '모하레베(신에 대한 적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2011년 1월 15일 처형됐다. 2010년 10월 오루미에 교도소에서 쓴 편지에서 케즈리는 체포된 뒤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케르만샤의 혁명수비대 수용소와 이란 북서부 오루미에에 위치한 이란 정보부 구금시설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구타당하고, 자신과 가족들의安危를 위협받고, 성기를 피가 나도록 걷어차여 14일간 부어올랐고, 다리를 걷어차여 생긴 8cm가량의 상처가 2010년 말까지 아물지 않을 정도로, 49일간 온 몸을 곤봉으로 심하게 구타당해 피멍이 들고 염증이 생길 정도의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즈리는 자신에게 가해진 부당대우에 대해 항의했으나 2010년 2월 정보부 건물로 끌려가 3일간 항의에 대한 신문을 받았고, 항의 내용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그의 요청은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쿠르드족 정치수인 **제이남 잘라리안**은 12월에야 그녀에게 내려진 사형선고가 감형됐음을 알게 됐다.

2009년 대선에 대한 논란과 시위가 벌어진 후 지난 2년 동안 많은 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처형당했다. 2월 11일 연례 이란 혁명 기념식을 앞두고 잠재적인 반정부 시위에 경고를 던지는 의미에서 매년 1월에 집중적으로 사형이 집행된다. 지난 3년 동안 이란 당국은 대중 매체의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했다. 정부는 2008 시청각 범죄에 관한 법률(Audio-Visual Crimes law)은 처벌 가능 범죄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법은 2011년에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 웹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매우 엄격히 적용됐다. 이런식의 법집행은 이란 정부가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단, 홈페이지 필터링,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차단, 정부 비판 웹사이트 해킹, 기자나 블로거, 영화산업 종사자 탄압 등 반정부 여론을 탄압하기 위한 이란 당국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란인민무자헤딘기구(PMOI)의 지지자로 알려진 **골람레자 코스라비 사바야니**는 PMOI에 우호적인 TV 방송국 시마에 아자디(자유의 소리)를 지원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2011년 말 '모하레베 (신에 대한 적의)'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았다. 역시 PMOI 지지자로 알려진 알리 사레미, 자파 카제미, 모함마드 알리 하지 아가에이 등 다른 3명도 같은 죄로 2010년 12월 26일과 2011년 1월 24일 사이에 처형됐다.

효과적 법률대리에 대한 접근권, 실질적인 항소 절차 등이 보장되지 않는 등 심각한 수준의 불공정 재판에 대한 우려도 높다. 어떤 피고인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텔레비전으로 공개 "자백"을 하도록 강요 받아 무죄 추정의 권리를 침해 받기도 했다.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변호사 선임권이나 영사관에 도움을 청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 아프간인이나 이중 국적자의 경우 더욱 그렇다. 국제법에 명시된 피고인의 항소 제기권도 심각하게 침해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징역형, 신체 절단,

태형이나 사형을 선고 받은 경우,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마약퇴치법으로 기소된 마약 사범은 항소를 아예 제기할 수 없다. 마약퇴치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또는 검찰총장이 사형을 확정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모든 사형 사건이 검찰총장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사면·감형위원회(Amnesty and Clemency Commission)의 추천에 따라 이란 최고지도자가 죄수를 사면해줄 수도 있다. 수감자들, 특히 정치수 등의 수감자는 수 주, 수 개월 혹은 심지어 수 년 동안 독방에서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신뢰할만한 보고도 많은데, 대부분 경우 재판 전에 그러한 대우를 받지만 재판 뒤에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다. 이란 법률에 따르면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형당하기 48시간 전에 사형 예고 사실을 통보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형수의 가족과 변호사는 사형 집행이 임박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만 접하거나 아예 통보를 받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는 유가족이 이란 당국에 돈을 내고 나서야 가족의 시신을 인도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형은 보통 교수형으로 집행되며, 대형 건설 크레인을 사용해 공개적으로 집행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지난 7월 일본 크레인 회사 타나노는 더 이상 이란에 크레인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 이란 당국은 이슬람 법률을 어기고 살인을 한 죄에 대해 "보복"(케사스)을 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사법부가 결코 뒤집을 수 없는 피해자 가족의 개인적 권리의 문제라고 주장한다.⁶¹ 그러나 이런 주장은 국제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주체는 결국 국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가족이 용서를 베푸는 '다이아(diyeh)'에 합의하는 경우도 국제법 하에서 국가에 사면을 요청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법원이 이런 거래를 "개인적인 용서"로 인정하고 사형을 감형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경우는 사형집행이 비밀리 이루어져 당국이 이를 공식 보고하지도 않고 사형수의 가족이나 변호사가 사형집행을 통보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란 활동가들에 의하면 사형수 본인조차 사형당하기 몇 시간 전에야 집행 사실을 알게 된다. 12월 21일, 사법부 수장인 아야톨라 사데그 라리자니는 이란에서 비밀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때때로는 한꺼번에 20명에서 60명까지 동시에 사형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바킬라바드 교도소의 경우에는 사형수가 교도소 복도 위쪽 들보에 매달려지는 방식으로 교수형을 당하기도 한다. 다른 교도소에서도 집단 처형이 이루어진다.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이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전히 미성년 범죄자, 즉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인 이들을 사형시키는 국가로 남았다. 국제법은 미성년 범죄자의 사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란 관료들은 미성년 범죄자를 더 이상 사형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은 계속 진행 중이다.⁶² 대다수 미성년 사형수는 살인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이기 하나 일부는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공식 보고에 따르면, 4월 이란 남부의 항구도시인 반다르 아바스에서 미성년 죄수 두 명이 처형당했다. 또 한 명인 알리 레자몰라 솔타니는 9월 21일 테헤란 근처 카라지시(市) 골샤흐르 광장에서 공개 처형 당했다. 솔타니가 처형 당한 자리는 그가 한 남성을 칼로 찔러 죽인 곳인데, 솔타니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이란 당국은 "상대적으로 짧은 이슬람력"에 근거하면 솔타니가 이미 18세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 외에도 네 건 정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1월에 이란 대법원은 샤얀 오미디와 또 다른 성인 한 명의 사형 선고를 승인했다. 이들은 살인 및 강도죄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오미디는 2010년 10월 범죄를 저지를 당시 16살 밖에 안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08년부터 이란 미성년 사형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 말 기준 이 목록에는 총 145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들 각 개인의 생사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란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처형당하는 사람 중 여성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다수는 살인으로 사

형을 선고 받았지만, 몇몇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소규모 마약 밀매에 가담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다. 모두 부양할 아이가 있는 호우리에 사바히, 레일라 하야티와 로그히에 카라지 세 여성은 소규모 마약 밀매로 지난 2011년 9월에 처형당했다. 최소 14명의 여성과 남성이 "결혼 상태에서 간통을 저지른 죄"로 투석형을 선고 받았다. 2009년 이후 실제 투석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사키네 모하마디 아슈티아니는 연중 내내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아슈티아니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006년에 징역형 및 투석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란 당국은 2011년 12월 아슈티아니의 형을 교수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에는 주로 해외 망명 이란인들로 구성된 작지만 성장하고 있는 이란 사형반대 운동이 두각을 드러냈다. 이란으로부터 빠져 나와 터키 등지로 망명한 인권옹호자와 그들의 변호사들도 그러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소한 9명의 변호사가 인권 관련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다는 죄로, 혹은 자신의 적법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로 이란에서 징역을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사법부 인권최고위원회의 모하마드 자바드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2011년 11월 16일 유엔 회의에서 "변호사 혹은 인권옹호자라는 이유로 투옥된 변호사는 없다"라고 말했다.

인권변호사인 **압둘파타 솔타니**는 2011년 9월 10일 구속돼 "테러단체에 관여", "반체제 선동행위", "반체제 불법단체 설립(인권옹호자센터)", "국가 안보를 해칠 의도로 공모와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진행중인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솔타니는 이란 당국이 "불법적인 상"이라고 칭한 2009년 뉘른베르크 국제인권상 수상을 수락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솔타니는 독일 출국이 금지돼 이 상을 수상할 수 없었다.

이란의 사형제도는 유엔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2월에 유엔 인권최고대표,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그리고 판사와 법률가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공개 성명서를 발표해 이란에서 사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안전장치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형이 사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유엔 사무총장은 점점 더 많은 정치범이 사형 대상 범죄인 모하레베(신에 대한 적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작년 여러 차례 지적했다.⁶³ 이란 법률에 따르면, 모하레베는 무장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인데, 유엔 인권최고대표, 유엔 특별절차에 따른 특별보고관들과 기타 독립적인 전문가들은 모하레베 적용이 매우 문제적이며 자의적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이란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교도소 내에서 비밀 집단 처형뿐 아니라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⁶⁴ 지난 9월 22일, 제4대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동료들과 함께 특히 마약 사범과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이란 정부에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1년 11월 2일 이란 국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밝히면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괴롭힘, 박해, 잔혹한 처벌과 심지어 사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사형을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된 범죄에 대해 적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 공개처형을 지속하고 있으며 또한 처형 방법으로서 투석형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국가에 의한 처형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선고 및 집행도 지속되고 있으며, 형법 개정안 제225조는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 배교자에 대해 의무 사형 선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⁶⁵

이라크 정부는 처형당한 사람의 이름이나 정확한 숫자 등 사형집행에 관한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지난 해 이라크에서는 2명의 외국인과 3명의 여성을 포함하여 최소 68명이 사형당했으며 수백 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라크 대통령은 2009년 1월과 2011년 9월 사이 총 735건의 사형 선고 최종 승인 요청을 검토하여 이 중 81건을 승인했다. 대부분의 사형 선고나 집행은 살인이나 납치, 강간과 기타 강력범죄 등 무장 집단의 공격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혐의에

대해 이루어졌다.

11월 16일, 테러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11명(여성 1명 포함)이 바그다드의 알카드히미야 교도소에서 처형당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 때 처형당한 남성 중 한 명은 이집트인이고 또 한 명은 튀니지 출신인 요스리 트리귀였다. 트리귀는 테러 관련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006년 미군에 의해 체포됐다. 같은 해 사마라에서 일어난 폭탄 공격에 가담한 혐의로 이라크 중앙형사법원(CCCI)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은 튀니지의 엔나흐다 당 대표 라체드 가노우치가 개입하여 잠시 유보되기도 했었다.

이라크 중앙형사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은 매우 짧았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몇 분이 채 안 걸렸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구속 중 조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를 통해 "자백"을 강요 받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경찰서나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을 때 변호사나 가족과의 면회나 연락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합리적인 시간 내 수사판사의 재판을 받지 못하거나 체포된 이유를 못 듣는 경우도 있었다. 법원은 피의자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자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피고인이 제기한 고문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은 이라크 국영 위성방송인 알이라키야를 통해 방영되는 경우도 자주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침해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11년 4월 27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소재한 파기원은 사담 후세인 정권 당시 이라크 육군 대령이었던 무아야드 아신 아지즈 압델-라자크에 대해 2006년 언도된 사형선고를 확정했다. 압델-라자크는 미군에 체포돼 2004년 이라크에 인도됐으며,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자백서"에 서명하도록 고문을 당한 뒤야 이라크 중앙형사법원(CCCI)에 처음 선 것으로 알려졌다. 압델-라자크의 가족들은 2006년 11월 구금 장소와 재판 내용, 사형 선고에 대해 TV 뉴스를 통해 알 수밖에 없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면회가 허가된 것은 2009년으로, 그가 체포된 지 4년이 지난 후였다.

12월 이라크 당국은 사담 후세인 정권에서 부총리 및 외무장관을 지낸 타리크 아지즈가 미군이 이라크로부터 철수한 후인 2012년에 사형집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아지즈는 지난 2010년 10월에 사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당국은 사형을 선고한 이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러 정치인이 지난 3월 서안지구 이타마르에서 한 이스라엘 가족을 살해한 두 팔레스타인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인들은 복수의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이스라엘은 1962년 아돌프 아이히만 외에 아무도 처형한 적이 없다.

2006년 이후 요르단에서는 사형집행이 없었으나, 2011년 최소 15건의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르단에서는 살인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피해자 가족이 선처에 동의하는 등 여러 이유로 법원이 정기적으로 사형을 감형시켜주고 있다.

2007년 이후 쿠웨이트에서 사형집행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2011년 살인과 마약 밀매로 최소 17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 중 세 명이 여성이었다. 샤리아 율법에 기반을 둔 쿠웨이트 형법에 사형에 관한 조항이 있다. 쿠웨이트에서는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외국인이 사형 사건에 결부되는 일이 자주 있다. 지난 1월, 한 이집트 남성이 필리핀 출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또 3월에는 두 명의 이란인과 한 명의 쿠웨이트인이 이란을 위해 첩보활동을 한 죄로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6월에 세 명의 방글라데시인이 또 다른 방글라데시 출신의 택시운전사를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결혼식 천막에 불을 질러 57명을 죽인 한 쿠웨이트 여성은 2010년에 사형을 선고 받았는데, 지난 6월 항소법원이 형을 확정했다. 쿠웨이트에서 여성에게 사형을 선고한 일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2011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쿠웨이트가 사형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공식 선언할 것을 촉구했으며, 국내외 안보나 마약과 같이 혐의가 모호한 범죄 등을 포함하여 많은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국내 법률과 자유권규약이 서로 상충할 경우, 국내 법률이 샤리아 율법에 기반했든 아니든 무관하게, 자유권규약이 우선시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자유권규약이 규정한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하지 않는 범죄들을 사형 대상 범죄에서 제외함으로써 자유권규약 제6조2항 위반 사항을 바로잡을 것, 또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⁶⁶

레바논은 2011년에 7년 연속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나, 현지 단체에 의하면, 2011년에 8건의 사형이 선고됐다. 이 중 5명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또 최소 3명은 이스라엘과 협력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 받았다. 레바논 법률에 따르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의회 의장 그리고 총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0월 세계사형반대의 날 기념 워크숍에서 다수의 레바논 비정부기구들은 사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사법 체계에 여러 결함이 있고 독립성이 없다면, 사형폐지에 찬성하는 답변이 53%이고 사법체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0%에 달하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2009년에 수행된 또 다른 비정부기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회 의원 중 74%가 "즉각적이거나 점차적인 사형 폐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리비아**에서의 사형 선고 및 집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2011년 2월이 되자 정부는 리비아의 상당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으며, 거의 연중 내내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법원은 제 기능을 못했고 죄를 지어도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하면서 오히려 초법적 처형이나 고문, 자의적인 구금 등이 더 많이 발생했다. 이는 알-카다피 측이나 반대 세력 모두 마찬가지였다.

2월 말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무력 분쟁이 이어지자, 사형과 기타 잔혹한 처벌이 다양한 범죄에 널리 활용됐다. 무암마르 알카다피 정권이 퇴진한 이후,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도 선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암마르 알카다피 그 자신과 가족 몇 명, 그리고 카다피 지지자 여러 명이 반대파에게 붙잡혀 불법적으로 살해당했다. 연말 현재, 중앙 당국의 통제권 밖에 있는 민병대가 카다피의 아들인 사이프 알이슬람 알카다피를 붙잡아 진탄 지역에 구금한 상태였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사이프 알이슬람 알카다피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리비아 당국은 그를 리비아 내에서 재판할 것이며, 분쟁 중 그가 한 역할에 대해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리비아 정보원의 전 수장인 압둘라 알세누시에 대해서도 사형을 구형하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연말 현재, 알세누시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나 그는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월 말,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국제형사재판소 소추관은 국제엠네스티 등 여러 관련자들이 지난 40년 동안 전혀 독립적이지 못했던 리비아의 사법체계가 사형에 의지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추관이 사이프 알이슬람 알카다피가 리비아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모로코/서사하라는 지난해 5건의 사형을 선고했으나 1993년 이래 실제 사형을 집행한 적은 없다. 10월, 아딜 알아트마니는 마라케시 지역 자마아 라프나에서 폭탄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03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서 테러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4월에는 모로코의 모하메드 국왕이 여러 죄수를 사면해주면서 5명에 대한 사형을 징역형으로 감형시켰다. 6월에는 법무부 모하메드 압덴나바우이 형사국장은 당시 모로코에는 여성 2명을 포함하여 총 103명의 사형수가 있다고 말했다.⁶⁷ 또한 7월 1일에 도입한 새 헌법은 생명권을 명시하고 있기에 사형 폐지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모로코는 앞으로 "가장 중한 범죄" 원칙에 부합하도록 사형 대상 범죄를 현재의 30개에서 9개로 줄이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1년 오만에서는 사형집행이 없었으며, 2010년에도 마찬가지로 사형집행이 없었다는 사실이 2011년 들어 공식 확인됐다.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는 3명이 처형당했고, 최소 5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 사형집행은 모두 하마스가 사실상 집권하고 있는 가자지구에서 이뤄졌으며, 팔레스타인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집행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무드 압바스 대통령의 승인 없이 진행됐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서안지구에서도 사형이 한 건 선고됐으나, 압바스 대통령은 사형 집행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는 각각 다른 내각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영토 내에서 형사 절차에 서로다른 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사형을 선고하는 군사법원에서는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PLO)의 1979년 혁명 법률을 양쪽 모두에 적용하고 있다. 하마스 정권은 사형을 적극 사용하고 있는 반면, 서안지구 형법은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법률에 의하면, 이스라엘과의 협력, 살인과 마약 밀매는 사형 대상 범죄에 해당된다. 가자지구에서 처형당한 세 명은 하마스 군사법원에서 "이스라엘과 협력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5월 5일, 이스라엘과 협력한 죄로 한 남성이 총살을 당했고, 7월 26일에는 같은 죄로 아버지 무하마드와 아들 라미 아부 가나스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2011년 카타르에서는 사형 집행이 기록된 바 없으며, 2010년에도 사형 집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2011년에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최소 세 건의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고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11년에 확인된 사형집행 건수만을 보더라도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 2010년에 27명이 처형당한 것에 비해, 2011년에는 최소 82명이 처형당했으며, 이 중 28명은 외국인이고 5명은 여성이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사형집행 수가 줄어들다가 다시 급격히 증가한 것이며, 사우디아라비아는 2007년 이래로(확인된) 사형집행 수가 매년 줄어들다가 2011년에 급격히 증가한 소수의 국가들 중 하나였다. 최소한 9명이 사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백 명의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으며, 상당 수가 마약 관련 범죄로 수감된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죄수들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재판을 받지 못했다. 변호인이 없거나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피고인이 듣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또 법원이 강압이나 속임수로 강제된 자백에만 근거하여 피고에게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형수도 있다. 2011년 10월 10일에 처형당한 반다르 빈 주자 빈 루마이산 알루하이비는 내무부 문서에 "미성년자"로만 분류되어 있었고, 범죄를 저지를 당시 혹은 처형당할 당시 몇 살이었던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몇 년 동안 사형집행을 당한 이들 중 많은 수가 외국인이었으며, 주로 아프리카나 아시아 개발도상국 출신의 이주노동자이다. 이들은 비밀스럽고 약식으로 진행되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특히 취약할 수 밖에 없다. 10월 7일, 8명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모두 남성)이 2007년 이집트인을 살해한 혐의로 리야드에서 참수형을 당했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등 이 8명의 이주노동자들 송출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개입하고,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심지어 다이아(보상금)를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다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 유가족은 다이아를 받고 사형수를 용서해줄 수 있다.

한 형제인 **무하마드 자베르 사바 알-자이드**와 **사우드 자베르 사바 알-자이드**는 2011년 4월 국왕이 사형선고를 승인하면서 언제든지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긴급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 형제는 1998년 살인 혐의로 사형이 언도되었는데, 이러한 판결은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형선고가 내려진 뒤 이들을 돕고 있는 변호사들은 이들 형제가 1심 당시 변호사와 접촉할 수도 없었으며 사우드 자베르 사바 알-자이드의 경우는 당국이 그를 압박하기 위해 나이 든 아버지를 체포하자 압박에 못 이겨 살인을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2009년 모두 성인이 된 자녀들은 살인자들의 다이아(보상금)는 받고 싶지 않다며, 두 사람의 처형을 바란다고 법원에 알렸다.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살인과 강간, 강도죄와 납치, 마법, 마약 관련 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사형을 적용했다. 9월 19일, 수단 국적의 압둘 하미드 빈 후사인 빈 무스타파 알파키가 "마법"을 행한 죄로 메디나에서 참수형을 당했으며, 12월 12일에도 한 여성이 "마법" 죄로 처형당했다. 2011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테러방지법인 테러 범죄 및 테러리즘 자금지원처벌에 관한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27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형 대상 범죄가 더 많아질 것이다. 또한 법안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는 반면, 미성년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금지하는 조항은 전혀 없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도 부족하다.⁶⁸

시리아도 계속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사형을 실제 집행했다는 보고도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리아 정부는 사형수의 가족에게 사형 집행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현재 정부는 개혁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있어서, 시리아 사형제도에 대한 상황을 모니터하고 정보를 수집하기가 더욱 힘들었다.

12월 말,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테러 행위를 목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거나 이의 조달을 돕는 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새로운 법은 시리아 정부가 "무장한 테러리스트"라 낙인 찍은 반정부 시위대를 겨냥한 것이다. 200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총 4,300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사드 가문의 40년 통치에 반대하는 시위는 연말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1991년 이래 튀니지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 지난 해에는 2008년 이래로 처음으로 사형선고도 없었다. 1월 14일, 상당 부분 평화적인 시위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지네 엘 아비디네 벤 알리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쳤고, 이로써 23년 간의 독재 정치가 급격히 종식되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시위가 진행되던 중 최소 300명이 사망했고 700명이 부상당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네 엘 아비디네 벤 알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부재인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이며, 살인과 고문을 자행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사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튀니지는 10월에 선거를 치렀으며,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이슬람주의 정당인 엔나흐다 당은 새로운 연립 정부를 구성했다. 새로 구성된 제헌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작성할 것이며, 인권활동가이자 한때 국제앰네스티 양심수였던 몬세프 마르주키가 새로운 임시 대통령이 되어 사형을 폐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었다.

2011년 2월 1일, 튀니지 과도정부의 내각은 여러 국제 인권 관련 조약을 비준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2003년 테러방지법을 위반한 죄로 지난 2007년에 사형을 선고 받은 사베르 라구비는 일반 사면 조치의 일환으로 2월에 석방됐다. 7월, 튀니지는 사형을 거부하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에 가입했다. 12월 마르주키 대통령은 국제앰네스티 튀니지지부와와의 면담에서 사형 폐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앞으로 유지해나갈 것이라 했다. 12월에 마르주키 대통령은 말리 정부에 사형을 선고 받은 튀니지 국적자 바치르 시문을 사면해주고 그를 튀니지로 인도해달라고 요청했고 말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라크에서 폭탄 공격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또 다른 튀니지 국적자인 요스리 트리귀 사건에 엔나흐다당 라체드 가노우치 대표가 개입하여 잠시 사형 집행을 유보시켰지만 결국 사형집행을 막지는 못했다.

아랍에미리트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2월 10일, 라쉬드 라비 알라쉬디가 두바

이에서 총살당했다. 알라쉬디는 2009년 한 모스크에서 4살의 남자아이인 무우사 목흐티아르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1년에 최소 31건의 사형이 선고됐으며, 이 중 최소 12명이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에 사형을 선고하는 일이 빈번했으며, 이들은 효과적인 법적 지원을 얻지 못하거나, 재판 절차나 최종 판결에 대한 내용을 공지 받지 못하거나, 혹은 피해자 가족에서 금전적 보상금(다이아)을 낼 기회가 없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9월 12일, 파키스탄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2010년 말 항소 절차가 완료된 17명의 인도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사형이 감형됐다. 샤르자 항소법원은 형을 2년 징역형에 다이아 지불로 줄였다. 이들은 2년의 형기를 이미 채웠으며, 피해자 가족은 340만 디르함(약 100만 미화달러)을 받는 대신 보복 요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타 형사 및 민사 절차가 남아 있어 이들은 2011년 말에도 여전히 수감 중이었다.

국제앰네스티의 2010년 연례사형현황 보고서에 대해, 2011년 4월 초 연방대법원의 한 판사는 아랍에미리트가 사형 대상 범죄를 샤리아 율법에 따라 재판한다며 보고서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살인 사건에서는 판사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만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족은 보복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이 판사는 미성년 범죄자 사형 선고와 관련, 인간이 신체적 사춘기에 접어들면 성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은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1997년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별도의 사법체계로서 존재하는 두바이 최고 심급의 법원인 두바이 파기원은 보통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는 편이지만 아부다비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대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하곤 한다.

예멘 당국은 2011년에 최소 41명을 처형하고, 최소 2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에 입수한 공식 정보에 의하면, 2010년에 총 62건의 사형이 집행됐는데,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53건보다 높은 수치이다. 연말 기준 예멘에는 수백 명의 사형수가 있었다. 예멘은 생명을 빼앗는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범죄를 포함해 다양한 범죄에 사형을 선고한다. 또한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했다.

예멘 법률이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선고 및 집행을 모두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년 범죄자가 처형당하고 있다. 해당 사형수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출생신고서가 없어서 사형수의 실제 나이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2011년 1월, 검찰총장은 1999년과 2004년에 각각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이었을 수도 있는 무하메드 타헤르 샤벳 사무과 푸아드 아흐메드 아리 압둘라 두 명에 대한 최종 항소를 거부했다.⁶⁹ 당시 국제앰네스티는 미성년자일 수도 있는 또 다른 8명의 사형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2월과 4월, 사나에 있는 법원은 마약 밀수입 죄로 시리아인 한 명과 이란인 한 명에게 선고됐던 사형을 확정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2011년 말, **이집트**, **리비아**와 **튀니지**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있는 과정이었으며 **알제리**, **바레인**, **시리아**, **예멘**은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2011년, 베냉은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한 법안을 채택했다. 베냉은 채택된 법안을 아직 공포하지 않고 있다. 시에라리온은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언했다. 나이지리아 역시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나의 헌법검토위원회는 새로운 헌법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 동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소말리아(10), 남수단(5), 수단(7+) 총 3개 나라에서 최소 22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다. 2010년에 기결수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나라는 모두 4개(보츠와나, 적도 기니, 소말리아, 수단)이었고, 총 19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2009년에는 오직 2개 나라, 즉 보츠와나와 수단에서 총 10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이 지역에서 사형집행은 드물게 일어나고 있고, 몇 안 되는 나라로 제한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25개국에서 최소 254건의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보츠와나(1), 부르키나파소(3), 카메룬(+), 차드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3), 감비아(13), 가나(4), 기니(16), 케냐(11+), 라이베리아(1), 마다가스카르(+), 말라위(2), 말리(2), 모리타니아(8), 나이지리아(72), 시에라리온(2), 소말리아(37+; 과도연방정부 32+, 폰트란드 4, 갈무두그 1), 남수단(1+), 수단(13+), 스와질랜드(1), 탄자니아(+), 우간다(5), 잠비아(48), 짐바브웨(1+)이 사형을 선고한 나라들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사형의 사용에서 점차 멀어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형을 여전히 선고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전에 비해 사형을 덜 선고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직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잠비아, 케냐, 모리타니아, 수단 정도만 사형선고를 형사사법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케냐, 모리타니아, 수단의 경우 나머지 국가에 비해 그 정도가 덜하다.

베냉의회는 8월 18일에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보니 토마스 야이 대통령은 연말까지 비준 절차를 마무리짓지 않은 상태였다. 베냉 형법은 여전히 다양한 범죄에 사형을 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형이 선고된 것은 1993년이 마지막이었고, 사형집행은 1987년이 마지막이었다.

보츠와나는 2011년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사형선고는 한 건 있었다. 기존에 수감되어 있던 10명의 사형수들은 감형되거나 사면되었다. 이 중 한 명은 2000년에 두 명의 짐바브웨인을 살해한 죄로 2008년에 사형을 선고받은 남아공 태생의 마이클 몰레페이다. 항소 과정에서 법원은 살인이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며 그 외 정상을 참작할만한 상황을 발견했다며 지난 5월, 몰레페의 형을 20년 징역형으로 감경시켰다. 보츠와나는 사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피의자가 보츠와나로 인도되어도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더욱 견고히 했다. 7월 정부 당국 발표에 의하면, 보츠와나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자 7명이 현재 남아공에 있으며 보츠와나가 이들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살인죄로 기소된 세 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그 중 한 명은 법정에서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동의안을 2011년에 준비했고, 여러 정부 고위급 관료들은 사형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월에 있었던 국제앰네스티 대표단과

의 면담에서 당시 인권장관은 제2선택의정서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12월 국제앰네스티 대표 단과의 면담에서는 로슈 마르크 크리스티앙 카보레 의회 의장 역시 비준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되면 이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제롬 트라오레 법무장관도 사형폐지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표명했다. 12월에 국제앰네스티 부르키나파소 지부와 다른 비정부기구들은 사형폐지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웃국가 베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등을 논의했다.

카메룬에서는 사형집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됐으나 사형 선고는 이어졌다. 2011년 11월 3일 공포된 대통령령으로 사형수 중 일부가 종신형으로 형을 감형 받았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세 번 공포된 이번 대통령령은 살인이나 가중된 강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형수를 제외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몇 명의 사형수가 감형을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2011년 3월 카메룬 정부는 2010년에 17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게 밝혔지만, 실제 사형수 숫자는 불명확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법무장관인 피르맹 페앵디로는 2011년 10월 르완다에서 개최된 사형제도에 대한 컨퍼런스 기간 동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사형폐지를 매우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회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컨퍼런스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사형폐지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시 컨퍼런스에서 르완다와 나미비아 정부 당국자들은 여론이 먼저 사형폐지로 기울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폐지로 향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차드는 2011년에도 사형을 계속 선고했다. 차드 정부는 1990년에 축출당한 전대통령 이센느 아브레가 살고 있는 세네갈 정부에게 그를 본국으로 인도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2008년 아브레 전대통령은 차드에서 국가 전복을 기도한 죄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여러 번 요청하고 아프리카연합이 2006년에 아브레를 재판에 회부하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세네갈 당국은 그를 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세네갈 정부는 1982년과 1990년 사이 반대 세력에 대한 살인과 고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벨기에로도 인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7월에 세네갈 정부는 아브레를 차드로 인도하겠다고 압박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었고 세네갈 정부는 범죄인 인도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다.

콩고공화국은 지난 7월, 인골 밀매죄로 세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사형제도가 법률에 여전히 남아 있고 사형도 계속 선고되고 있다. 군사법원이 민간인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일도 있다. 형법 제 5조는 사형을 허용하고 있으며, 6조는 대통령이 사형 집행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군형법 역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 방법은 군사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6월에는 고마에 있는 군사법원이 지난 2010년 인도 출신 유엔평화유지군 3명의 살인 사건에 관여한 죄로 알리 캄발레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0월, 군사법원은 19세 여성을 음반다카에서 살해한 혐의로 한 군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7월 국무회의에서 인도주의법 위반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특수 법원을 세워 국제형사재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결국 상원이 이 법안을 거부했다. 이 법안은 사형을 선고 가능한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난 10월 루줄로 밤비 레싸범무·인권부 장관은 1998 ~2002년까지 적용되었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음을 확인해주면서 보다 효과적인 사법·경찰제도를 구축하고 분쟁 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불안정의 해소 등, 사형폐지를 고려하기 전에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도기니에서는 2011년 동안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형선고도 없었다.

에리트레아에서는 사형제도 현황에 대한 공식 정보를 얻기가 대단히 힘들다. 수천 명의 정치수들과 양심수들이 여전히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으며, 어느 경우에는 그 기간이 17년에 달하기도 한다. 대부분 수감자들은 명확한 범죄행위로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았다. 에리트레아 정부는 수감자들의 건강 상태와 현재 위치를 비롯한 수감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수감자들이 교도소에서 살해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알려졌다. 이런 맥락에서 2011년 사형집행이나 사형선고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에티오피아에서 사형집행과 사형선고가 보고되지 않았다. 5월 28일, 에티오피아 대통령 기르마 월데기 오르기스는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 전 정권의 고위층 23명에 대한 사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이들은 멩기스투 전 대통령이 1991년에 축출된 이후부터 수감 중이었고, 멩기스투 집권 시절 살인과 고문을 저질러 2008년에 집단학살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7월,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 없이 피고가 결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뿐 아니라 법원이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사형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모든 재판에서 공정재판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모든 사형수들에 대한 감형과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했다.⁷⁰

2011년 **감비아**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1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은 살인죄 뿐 아니라 반역죄에 대해서도 선고되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종종 심각할 정도로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형이 선고되었다. 항소법원은 4월 국가전복기도죄로 2010년에 사형을 선고받은 8명 중에 7명에 대해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4월 4일, 감비아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했는데, 마약 관련 범죄의 처벌 종류에 사형이 포함된 것은 2010년의 일이었다. 형법과 2007년 인신매매 금지법 역시 1997년 헌법에 부합되도록 개정되었는데, 감비아 헌법 17조 2항은 폭력을 수반하거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성 물질을 투여하는 범죄가 아닌 경우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

가나는 1993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에 4건의 사형선고가 있었고, 그 중 한 건은 여성에게 선고된 것이다. 가나에는 연말 기준 138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그 중 4명은 여성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10년이 지난 사형수는 종신형으로 감형을 받는다. 가나 헌법검토위원회는 12월 20일에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헌법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가나에서 사형을 헌법에서 삭제하려면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최근 집권한 **기니**의 알파 콩데 대통령은 지난 7월에 더 이상 기니에서 사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월 동남부 지역에서 벌어진 부족간 폭력행위에 연루됐던 16명이 9월에 칸칸 시(市)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 중 8명은 법정에서 출석하지도 않은 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 6월에 **케냐** 항소법원이 살인에 대해 사형 선고를 의무화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수반한 강도죄"에 여전히 사형이 의무적으로 선고되고 있다. 2011년에 살인과 강도죄에 대해 최소한 11건의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사건에서 법원 판결이 각기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판사들은 살인에 대한 의무 사형 선고는 위헌이라는 2010년 항소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고 있다.⁷¹

하지만 지난 5월 케냐 검찰총장은 형법 204조가 재판관이 개별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2011년 6월, 고등항

소법원은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한 죄수를 30년 징역형으로 감형시켰고, 형법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의무 사형선고가 2010년 8월에 개정된 헌법이 명시한 생명권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2010년 항소법원의 위헌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지난 5월 법무 및 헌법 장관(Minister of Justice and Constitutional Affairs) 인무톨라 킬론조는 2011년 발의된 '윤리와 반부패에 관한 법률'에서 부패에 대한 처벌로서 사형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몸바사의 이슬람교 성직자들은 사형 대상 범죄의 범위를 넓혀 종교 시설에 보호 중인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등 '남색'행위에 관여한 종교지도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1년 4월,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전임 특별보고관이 2009년에 케냐에 권고한 바를 케냐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당시 특별보고관은 사형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의도적으로 생명을 박탈한 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하며, 의무 사형 선고 제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⁷²

2011년에 라이베리아는 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라이베리아는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사형을 선고했다.

2011년 3월에 열린 제1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라이베리아는 2005년에 가입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명시된 국제적 의무를 지켜야 함을 인정했다. 그리고 사망자가 발생한 무장강도, 테러행위, 공중 납치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2008년 법률을 철회하기 위하여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사형집행이 없었지만, 사형선고는 계속되고 있다. 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2011년 9월 현재 사형수는 58명 있다.

말라위 국내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2건의 사형선고가 있었는데, 관행적으로 모든 사형선고는 종신형으로 감형된다.

2011년 말리 법원은 최소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사형집행은 없었다. 2007년에 정부가 제출했던 사형폐지법안은 2011년에 다시 상정됐지만, 의회가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11월, 이슬람 알카에다 마그레브(AQIM) 소속으로 알려진 튀니지 출신인 바치르 시문은 1월 5일 프랑스 대사관을 공격하여 1명의 말리인 사망자를 낸 테러행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튀니지의 몬세프 마주르키 대통령이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중재하여 사형집행을 중단시키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12월 15일 아마두 투마니 투레 말리 대통령은 시문을 사면했다.

모리타니아에서는 1987년 이후 한 건의 사형집행도 없었으며 사형이 집행될 위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사형선고를 계속하고 있다. 2011년에 8건의 사형이 선고됐다. 3월에는 3명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3명과 기존에 사형을 선고 받은 5명을 포함해 또 다른 10명이 강제실종됐다. 이들은 5월 23일에 위치가 알려지지 않은 구금 시설로 이송됐으며, 가족이나 변호인과 면담할 수 없게 됐다. 5월 15일, 누악초트의 형사법원은 18세 미만일 때 저지른 살인으로 3명의 청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국제법은 물론 모리타니아 국내법도 위반했다. 하지만 12월 8일, 검찰의 항소에 따른 재판에서 항소법원은 이들의 형을 법률 상 가장 높은 형량인 12년 징역형으로 감경시키고 추가로 벌금형을 부과했다.

니제르에서는 사형선고나 사형집행이 보고되지 않았다. 2011년 2월에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니제르 대표단은 비록 지난 2010년에 니제르 임시의회가 사형폐지 법안을 부결시켰지만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에는 약 830명의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다. 1999년 5월 군사통치에서 민주주의로 정권이 이양된 이래로 나이지리아에서는 최소 750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기간에 최소한 22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처형됐다. 2006년 이후 사형집행은 없었지만, 2011년에만 최소 72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많은 사형수들이 노골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에서, 혹은 재판도 받기 전에 10년 이상 복역을 한 후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부분이 사형은 주(州) 법원에서 선고됐다. 나이지리아의 형법에 의하면, 반역, 살인, 모살, 사형으로 처벌해야 할 과실 치사, 무장강도에는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샤리아 형법을 적용하는 북부 12개 주(州)의 경우 강간, "남색(sodomy)", 간통 역시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10월, 연방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나이지리아가 사형집행에 대한 공식 모라토리엄을 이미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 만한 공식적인 관보가 발행되지는 않았다. 사형제도에 대한 토론을 위해 연구단체가 구성되기는 했으나, 6월 사형의 적용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사망자가 발생한 테러행위에 협조한 죄까지 사형 대상 범죄에 포함됐다. 테러방지법의 조항들은 불명확하고, 너무 광범위하고, 자유의 적법한 박탈과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모순된다. 10월, 나이지리아 의회는 납치 및 인질범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사형 범위를 더욱 확장하는 법안을 논의했다.

시에라리온 정부는 2011년 4월 독립 50주년에 맞춰, 여성 1 명을 포함해 최소 4명의 사형수를 사면했고, 베이비 알리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형수의 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베이비 알리우는 2010년 11월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12월에는 고등법원이 사형을 선고받은 한 여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형 선고를 번복했다. 이 여성은 2010년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다. 시에라리온에서는 지난 해 사형집행이 없었지만 지난 5월, 2명의 살인범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011년 12월 22일 종결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시에라리온 정부는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 사형제도 폐지, 그리고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권고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였다. 같은 달, 시에라리온 법무장관은 국제앰네스티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시에라리온이 사형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을 수립했다고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제 시에라리온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다.

소말리아에서는 10명이 사형집행됐고, 최소 37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⁷³ 과도연방정부(TFG)는 정부와 동맹을 맺은 보안군 내부 갈등이나 약탈, 민간인이 저지르거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 여러 범죄에 대처하는 데 군사법원을 활용했다. 소말리아 상당 지역을 통제했던 무장 이슬람주의 조직인 알샤바브가 수도 모가디슈로부터 철수한 후인 2011년 8월 13일, 과도연방정부 대통령은 긴급 지침을 하달했다. 이 지침에 따라 과도연방정부의 군사법원은 알샤바브가 철수한 모가디슈 일부 지역에서 벌어진 모든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됐고, 민간인이 저지른 범죄도 이에 해당된다. 과도연방정부는 2011년 모가디슈에서 6명을 처형하고, 여성 한 명을 포함하여 최소 3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11년 8월 22일, 과도연방정부 군사법원에서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두 군인이 항소할 기회조차 없이 처형당했다. 8월 29일, 군사법원은 알샤바브에게 무기를 판매하려 했으며 민간인 여성 한 명을 포함해 추가 두 명의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9월에는 과도연방정부 군사법원이 최소 14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09년에 설립된 과도연방정부의 군사법원은 변론할 권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 등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경우 항소하거나 사면 혹은 감형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 더욱이 민간인들도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이는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 8월 29일, 민간인 여성에게 사형을 선고한 후, 과도연방 정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에는 민간인을 일반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9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과정에서 과도연방정부는 궁극적 폐지를 목적으로 사형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1년 말까지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한 후속조치는 없었으며, 군사법원은 여전히 사형을 선고하고 있었다.

준자치지역인 폰트랜드에서는 3명이 처형됐고, 최소 4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 갈무두그에서는 한 명이 사형을 선고 받은 후 처형됐다. 자체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소말리랜드공화국에서는 사형 선고가 없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보츠와나로 인도될 경우 사형집행을 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보츠와나로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남가우텡 고등법원은 지난 9월 22일, "제베 외 1인 대(對) 내무장관 외 8인" 사건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요청하거나 문서로 받아내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인을 사형존치국으로 퇴거, 인도, 이전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형은 예외 없이 전적으로 위헌"이라는 입장이 법률로 확립되어 있으며, "사형집행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생명권의 제한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12월 15일, 프레토리아 중앙교도소 "교수대 박물관" 개관식에서 제이콥 주마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날 겪은 고통 때문에 민주적으로 사형을 금지하기로 했다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7월 9일, **남수단**이 독립국가가 된 이후, 5명이 처형당했다. 11월에만 4명이 처형됐으며, 모두 살인죄였다. 남수단은 수단의 사형존치 입장을 그대로 승계했으며, 7월에 채택한 임시 헌법은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 2011년에는 최소 한 건의 사형을 선고했다.

남수단에서 사형집행은 중앙 에콰토리아주(州) 주바 교도소, 서부 바르엘가잘주(州) 와우 교도소, 상류 나일주(州) 마라칼 교도소 세 곳에서 실시된다. 11월 초, 주바 교도소에 91명, 와우교도소에 32명, 마라칼 교도소에 27명의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었다. 이들 사형수 모두는 남성이며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는 하자가 많았다. 과거 많은 사건에서 법적 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고가 아랍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재판이 아랍어로 진행됐으며, 효과적인 항소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 사형집행영장이 발부되고 사형수가 사형수 수감 구역으로 옮겨지고 나면 교도소 측이 피해자 가족과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사형을 면제하는 대신 가해자가 가족으로 배상해주는 식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도 있다. 사형이 집행된 후에 만약 사형수의 유가족이 시신을 찾아가지 않으면 교도소 측이 시신을 매장한다.

수단은 최소 7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북부 다르푸르 지역의 사형수 7명은 2005년에 제정된 테러방지법과 수단 형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11월 29일 북부 다르푸르의 특수형사법원이 형을 확정했다. 사형수 중 2명은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이였다. 이들 사형수 7명은 10명으로 구성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다르푸르 무장반군인 "정의평화운동"(JEM)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2010년 5월 차량 절취죄로 같은 해 남부 다르푸르 특수형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6월, 카르툼에 소재한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법정에서 세웠기 때문에 재심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12월 4일, 대법원에 항소가 추가적으로 제기됐다. 2011년 5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과정에서 수단 정부는 수단 헌법과 2010년 아동법 정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아들였다.

2011년 말 기준, **스와질랜드**에는 3명의 사형수가 있었으며, 2011년 동안 한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4월, 데이빗 시멜라네는 34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지 10년 만에 고등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시멜라네는 항소를 제기했다. 2006년에 개정된 헌법은 사형을 허용하고 있지만, 1983년 이래 실제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2011년 10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스와질랜드의 법무 및 헌법 장관은 "스와질랜드가 법적으로는 사형존치국이나 사실상은 폐지국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사형을 폐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며 1983년 이후 45건의 사형 선고 중 42건을 중신형으로 감형했다고 했다.

탄자니아 법원은 사형을 계속 언도하고 있다. 2011년 10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탄자니아 대표단은 사형 폐지를 둘러싼 국내 여론이 여전히 양분되어 있어 아직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범적공치(good governance) 장관인 마티아스 치카웨는 탄자니아가 사형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지난 16년 동안 사형에 대한 비공식 모라토리움을 유지해 왔다고 했다. 11월 29일 위헌심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셀리나 콤바니 법무·헌법 장관은 사형제도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생명권과 충돌하는지 여부도 심사 대상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세계의 탄자니아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우간다는 2011년에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한 소위 "가중 동성애"에 사형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도 지속됐다. 애초 2009년에 발의된 이 법안은 우간다 의회가 임기만으로 공식 해산함으로써 폐기됐다. 그러나 법안의 지지자들은 차기 의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나서고 있다.⁷⁴ 이 법안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혐오와 폭력을 묵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11월 11일, 고등법원은 수잔 키굴라와 페이션스 난삼바에 대한 사형을 각각 징역 20년과 16년으로 감경했다. 이 두 명은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모든 살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게 하는 법률 때문에 2002년에 사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009년 우간다 대법원은 키굴라를 비롯한 417명에 대한 의무 사형 선고를 모두 뒤집었다. 고등법원은 이 두 사건 각각의 특징을 검토한 결과 사형 선고가 과도했다고 결론 내렸다. 2009년 대법원 판결 이후 사형 선고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사건의 수는 이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사건에서는 수감자가 석방되거나 감형되고 새로운 심리를 거쳐 개별적 상황에 부합하는 형벌이 부과됐다. 법원이 양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각 법원의 재선고 결과는 매우 일관적이지 못하다.

2011년 10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과정에서, 우간다 대표단은 헌법검토위원회가 권고한대로 사형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헌법검토위원회는 대다수 우간다인이 살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공식 정보에 따르면, **잠비아**에서는 48건의 사형이 선고됐으며, 주로 살인과 "가중된" 강도죄에 적용됐다. 연말 현재 여성 5명을 포함하여 총 288명의 사형수가 있다. 13명은 감형을 받았다. 11월 16일 마이클 사타 대통령은 향후 12개월 동안 헌법을 개정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2011년 **짐바브웨**에서는 최소 1건의 사형이 선고됐다. 지난 5년 동안 사형집행은 없었다. 7월에 반역죄로 기소된 6명의 짐바브웨 활동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2월 법률을 가르치는 대학 강사와 '민주

적 변화를 위한 운동(MDC)의 무니아라드지 귀사이 전 의원이 이집트와 튀니지 봉기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6명의 활동가들은 이 세미나에 참석하던 중 체포됐다. 검찰 측은 이 6명이 세미나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비슷한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이 반역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잠바브웨에서는 아직도 반역죄로 사형을 당할 수 있다.

2011년 10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짐바브웨 대표단은 지난 2010년에 시작하여 2012년에 완료 예정인 헌법 개정 과정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법무장관이자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연합 애국전선(ZANU-PF) 법률실장을 역임했으며 식민지 시절 사형수로 복역했던 에멀슨 음낭가그와 국방장관, 또 전 고등법원 판사 모두 사형을 폐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6월에는 법무부 맥스웰 랑가 차관 직무대행이 헌법심사 과정에서 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수 년 동안 내각이 당시 55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명령 서류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 집행 서류 처리는 사형 집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2011년 말, 가나, 탄자니아, 잠비아, 잠바브웨가 개헌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부르키나파소와 말리에서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사형폐지법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베냉은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절차가 아직 마치지 못했다.

2011년 말 현재, 아프리카연합(AU)과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아프리카헌장)' 38개 회원국 중 16개국이 법률상 사형폐지국이며, 22개국은 사실상 폐지국이다. 지역적 차원에서 볼때, 이는 아프리카 국가의 3분의 2 이상이 더 이상 사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계 국가 중 2/3 가 법률상 혹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것과 비슷하다.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위원회(아프리카위원회)는 아프리카헌장에 사형폐지를 규정하는 선택의정서 도입 문제를 계속 논의 중이다. 선택의정서 제정은 2010년에 최초로 제안된 바 있다. 2011년 5월 2일, 아프리카위원회 위원이자 아프리카위원회 산하 사형제도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인 자이나부 실비 카이테시는 감비아 반출에서 개최된 아프리카위원회의 49차 정기 회의에 제출한 의장 보고서에서 "사형은... 아프리카헌장 제4조가 명시한 생명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형벌이다"라고 밝혔다.

가봉 출신의 아프리카연합 장 핑 집행위원장은 2011년 10월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사형 폐지 또는 사형집행 중단에 대한 지역회의에서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장 핑 위원장은 "사형은 [아프리카]헌장 위반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사형폐지를 지지하며 2012년 유엔 총회의 새로운 "사형제도의 사용에 관한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 말했다. 지역 회의는 핸드오 프케인이라는 비정부기구와 르완다 법무부가 공동 주최했다. 르완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은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며 르완다가 2007년 사형을 폐지한 것은 과거의 폭력과 완전히 단절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르완다와 나미비아 법무장관들은 대중 여론이 적대적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록 I: 2011년 보고된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 현황

본 보고서는 사법체계 내에서 사형제도가 운영된 상황만을 다루고 있다. 아래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안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최대치이나, 실제 수치는 이보다 상당히 높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일부 국가들은 의도적으로 사형제도 관련 사법 절차를 은폐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사형 선고 및 집행 건수를 기록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나라 이름 뒤 숫자와 "+"가 있을 경우,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추산한 최소치임을 의미한다. 숫자 없이 "+"만 있을 경우, 해당 국가가 (한 건 이상) 사형을 선고했거나 집행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이다. 전세계 또는 지역별 통계를 취합하는 경우, "+"는 2로 계산되었음을 일러둔다.

2011년 보고된 사형집행 현황

중국 1000s	베트남 5+
이란 360+	남수단 5
사우디아라비아 82+	대만 5
이라크 68+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3 (하마스가 집권 중인 가자지구에서)
미국 43	아프가니스탄 2
예멘 41+	벨라루스 2
북한 30+	이집트 1+
소말리아 10 (과도정부 6, 폰트랜드 3, 갈무두그 1)	아랍에미리트 1
수단 7+	말레이시아 +
방글라데시 5+	시리아 +

2011년 보고된 사형 선고 현황

중국 +	대만 16	벨라루스 2
파키스탄 313+	요르단 15+	말라위 2
이라크 291+	수단 13+	말리 2
이란 156+	감비아 13	시에라리온 2
이집트 123+	케냐 11+	트리니다드토바고 2
인도 110+	일본 10	남수단 1+
말레이시아 108+	사우디아라비아 9+	짐바브웨 1+
스리랑카 106	레바논 8	보츠와나 1
미국 78	모리타니아 8	라이베리아 1
나이지리아 72	인도네시아 6+	세인트루시아 1
알제리 51+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5+ (가자지구 4, 서안지구 1)	한국 1
방글라데시 49+	싱가포르 5+	스와질란드 1
잠비아 48	바레인 5	아프가니스탄 +
태국 40	모로코/서사하라 5	카메룬 +
소말리아 37+ (과도연방정부 32+, 퐁트랜드 4, 갈무두그 1)	파푸아뉴기니 5	차드 +
미얀마 33+	우간다 5	콩고민주공화국 +
아랍에미리트연합 31+	가나 4	마다가스카르 +
예멘 29+	가이아나 3+	몽골 +
베트남 23+	카타르 3+	북한 +
쿠웨이트 17+	부르키나 파소 3	시리아 +
기니 16	콩고공화국 3	탄자니아 +

부록 II: 2011.12.31. 현재 사형폐지국과 사형존치국 현황

전 세계 2/3 이상의 국가가 법적·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그 수는 다음과 같다.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96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9

사실상 사형폐지국: 35

법적·사실상 사형폐지국의 총 합계: 140

사형존치국: 58

다음은 각 4가지 범주(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사실상 사형폐지국, 사형존치국)에 속하는 국가 목록을 나열한 것이다.

1.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모든 범죄에 대해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

알바니아, 안도라,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부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부룬디, 캄보디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콜롬비아, 쿡 제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그루지야, 독일, 그리스, 기니비사우, 아이티, 바티칸,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말타, 마셜 군도 공화국,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우에, 노르웨이,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르완다,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코소보 포함), 세이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동티모르, 토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2.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법률상 사형이 군법이나 예외적 상황에서 예외적 범죄에 한해 존재하는 국가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엘살바도르, 피지,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페루

3. 사실상 사형폐지국

살인 등의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거나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 혹은 관행을 수립한 국가

알제리, 베냉, 브루나이,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공화국, 에리트레아, 감비아, 가나, 그레나다, 케냐, 라오스,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아, 모로코, 미얀마, 나우루, 니제르, 파푸아뉴기니, 러시아⁷⁵, 시에라리온, 한국, 스리랑카, 수리남, 스와질란드,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통가, 튀니지, 잠비아.

4. 사형존치국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국가

아프가니스탄, 앤티카 바부다,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리즈, 보츠와나, 차드, 중국,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도미니카, 이집트,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기니,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레소토, 리비아, 말레이시아, 몽골, 나이지리아, 북한, 오만,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카타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대만,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우간다, 아랍에미리트연합, 미국, 베트남, 예멘, 짐바브웨.

부록 III: 2011. 12. 31. 현재 사형제도 관련 국제조약 비준 현황

국제사회는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제조약 4개를 채택하고 있다. 1개는 전지구적인 조약이며, 다른 3개는 지역적 협약이다.

아래는 각 조약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 당사국 및 이들 조약에 서명은 했으나 비준은 하지 않은 국가의 현황이다. (국가는 가입이나 비준을 통해 국제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서명은 후에 비준을 통해서 당사국이 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다. 국가는 국제법상 자국이 당사국인 조약의 조항을 존중하고, 자국이 서명한 조약의 목적과 목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한 범국가 조약이다. 이 의정서는 사형제도의 완전 폐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비준이나 가입시 발효 유보를 통해 전시에 사형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 허용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당사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지부티,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그리스,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말타, 멕시코,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 필리핀, 포르투갈, 루마니아, 르완다, 산마리노, 세르비아, 세이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동티모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총 73개국)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 기니비사우, 폴란드, 상투메프린스페 (총 3개국)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

1990년 미주기구총회에서 채택된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는 사형제도의 완전 폐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비준이나 가입시 발효 유보를 통해 당사국이 전시에 사형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주인권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당사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총 12개국)

유럽인권협약 제6의정서

1982년 유럽의회가 채택한 사형제도에 폐지에 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유럽인권협약) 제6의정서는 평시 사형제도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국은 "전시나 즉각적인 전쟁의 위협이 존재하는 시기"에 한해 사형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유럽인권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당사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말타,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총 46개국)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은 국가: 러시아 (총 1개국)

유럽인권협약 제13의정서

2002년 유럽의회가 채택한 모든 상황에서의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유럽인권협약) 제13의정서는 전시나 즉각적인 전쟁 위협이 있을 때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의 사형제도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의 당사국은 모두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당사국: 알바니아,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말타,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총 42개국)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은 국가: 아르메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총 3개국)

미주

¹ *Le figaro*, “Maroc: la voie à l’abolition de la peine de mort est ouverte”, 2011년 6월 30일, <http://www.lefigaro.fr/international/2011/06/29/01003-20110629ARTFIG00730-maroc-la-voie-a-l-abolition-de-la-peine-de-mortest-ouverte.php> (2012년 2월 28일 접속).

² *Malaysia News*, “Public Opinion Will Be Taken Into Account Before Abolishing Death Penalty – Nazri”, 2011년 10월 13일, <http://www.mymalaysianews.com/malaysia/1549-public-opinion-will-be-taken-into-account-before-abolishing-death-penalty-nazri> (2012년 2월 28일 접속).

³ *United Nations Radio*, “Number of executions in Iran can be reduced, says official”, 2011년 11월 16일, <http://www.unmultimedia.org/radio/english/2011/11/number-of-executions-in-iran-can-be-reduced-says-official/> (2012년 2월 28일 접속).

⁴ *Southern Metropolis Daily*, 장치아판, “Death Penalty Numbers Are Not ‘State Secrets’”, 2011년 9월 9일.

⁵ *Japan Times*, “Japan bar federation to establish panel for abolishing death penalty”, 2011년 12월 18일, <http://www.japantimes.co.jp/text/nn20111218x3.html> (2012년 2월 26일).

⁶ *케이지 히라노*, “Lawyer federation urges debate to end death penalty”, Japan Innocence & Death Penalty Research Center, <http://www.jiadep.org/Nichibenren.html> (2012년 2월 26일).

⁷ *The Independent* 지 2011년 7월 9일,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mericas/i-never-hated-mark-my-religion-teaches-that-forgiveness-is-always-better-than-vengeance-2309526.html> (2012년 3월 1일 접속).

⁸ *Newsday* “Death penalty should not have room in new charter”, 2011년 10월 19일.

⁹ G8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영국, 미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연합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도 G8 정상회의에 참가한다.

¹⁰ 몽골 의회는 2012년 1월 5일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¹¹ 2011년 2월 25일, 중국은 사형 대상 범죄를 68개에서 55개로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형법 개정안은 동시에 “장기 적출, 강제 장기 기증, 미성년 대상 강제 장기 적출”의 경우 살인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는 사형 선고 대상 범죄다.

¹² 2011년 1월, 대만 총통은 1997년 처형된 치양 쿠오칭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¹³ 형의 선고와 항소 절차가 모두 끝나 유죄판결을 받은 이가 이후에 원래의 범죄 혐의를 벗고 무죄로 풀려나는, 즉 법적으로 무죄로 간주되는 상황을 말한다.

¹⁴ 사실상의 정부인 하마스에 의한 사형집행

¹⁵ 실제 나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정부들은 모든 적절한 기준을 적용해봐야 한다. 실제 나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 좋은 관행이라 여길 수 있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전 정도를 보는 것이다. 그러한 각각의 기준들은 논란이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 범죄자로 보는 편을 택해야 하며, 따라서 그 경우 사형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아동권리협약 3조 1항에서 요구되는 아동에 대한 모든 행위는 해당 아동의 최대 이해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한다.

¹⁶ 추밀원 사법위원회는 *Trimingham v. The Queen* 사건에서 사형이 부과되어야 하는지에 질문에 적용할 수 있는 “두가지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2009년 6월 22일).

- ¹⁷ 인종차별위원회, 쿠바에 대한 최종견해, 78th session, 2011년 4월 8일, UN document CERD/C/CUB/CO/14-18, para.12.
- ¹⁸ 인권이사회,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Saint Kitts and Nevis, 17th session, 2011년 3월 15일, UN document A/HRC/17/12.
- ¹⁹ 인권이사회,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Saint Lucia, 17th session, 11 March 2011, UN document A/HRC/17/6, para.38.
- ²⁰ 인권이사회, Addendum to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Saint Lucia, 17th session, 1 June 2011, UN document A/HRC/17/6/Add.1.
- ²¹ 인권이사회,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18th session, 11 July 2011, UN document A/HRC/18/15.
- ²² 인권이사회,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Suriname, 18th session, 11 July 2011, UN document A/HRC/18/12.
- ²³ 개인청원 No. 1110/2002, *Pagdayawon Rolando v. Philippines*, 자유권위원회의 견해, 2004년 12월 8일, UN document CCPR/C/82/D/1110/2002, para. 5.2.
- ²⁴ 인권이사회,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rinidad and Tobago, 19th session, 2011년 12월 14일, UN document A/HRC/19/7..
- ²⁵ 자유권규약 6조가 특정 상황에서 사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해당 조항은 “이 조항의 어떠한 부분도 해당 규약의 당사국이 사형폐지를 가로막거나 연기시킬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²⁶ 인권이사회,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nited States of America, 16th session, 2011년 3월 8일, UN Doc: A/HRC/16/11/Add.1.
- ²⁷ 미 국방부는 파키스탄 국적자인 칼리드 셰이키 모하메드와 알리 압 알아지즈, 예멘 국적자 왈리드 빈 아타시와 람지 빈 알시브,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자인 무스타파 알 하우사위를 2011년 9월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사형 적용될 수 있게되는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2011년 4월 20일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자인 압 알 라힘 알 나시리가 ‘전쟁법에 반한 살인’ 과 ‘테러리즘’ 등 2009년 군사위원회 법에 의해 기소되었다고 발표했다. 군사위원회는 정부가 압 알 라힘 나시리의 다음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하도록 승인했다. 2011년 동안에는 다른 5명에 대해서 그러한 승인이 난적이 없다.
- ²⁸ 2007년, 카운터테러리즘과 인권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미국에 군사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UN Doc A/HRC/6/17/Add.3). 또 2009년,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미국에 군사위원회에 사형사건을 재판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UN Doc A/HRC/11/2/Add.5).
- ²⁹ *World Crunch*, “A Rare Glimpse Into The Horrors Of Life On Chinese Death Row”, 2011년 11월 30일 <http://www.worldcrunch.com/rare-glimpse-horrors-life-chinese-death-row/4190> (2012년 2월 26일 접속), *Economic Observer*에서 번역, 2011년 11월 29일 <http://www.eeo.com.cn/2011/1129/216680.shtml> Heilongjiang Daily 지 인용.
- ³⁰ *Jakarta Globe*, “179 Indonesians Face Death Penalty in Malaysia: Task Force”, 2011년 7월 7일, <http://www.thejakartaglobe.com/home/179-indonesians-face-death-penalty-in-malaysia-task-force/451376> (2012년 2월 27일 접속).
- ³¹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0호 (2007), 44th session, 2007년 4월 25일, UN document CRC/C/GC/10.
- ³² 아동권리위원회, 라오스에 대한 최종견해, 2011년 4월 8일, UN document CRC/C/LAO/CO/2, paras.71 and 72.

³³ "Time to abolish death sentence", Malaysia Today, 2011년 4월 3일, <http://www.freemalaysiatoday.com/2011/04/03/time-to-abolish-death-sentence/> (2012년 2월 29일 접속).

³⁴ 몽골 의회는 2012년 1월 5일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³⁵ 자유권위원회, 몽골의 5차 정기보고서, 2009년 9월 16일, UN document CCPR/C/MNG/5 and Corrigendum, UN document CCPR/C/MNG/Q/5/Corr.1.

³⁶ 자유권위원회, 몽골에 대한 최종견해, 101st session, 2011년 5월 2일, UN document CCPR/C/MNG/CO/5. 2011년 5월, 몽골 의회는 2011 ~ 2012년 사이에 "사형을 법률에서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결의를 통과시켰다.

³⁷ 2012년 1월 2일 대통령령 No. 1/2012로 33명의 사형수 모두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

³⁸ 인권이사회,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Myanmar, 17th session, 2011년 3월 24일, UN document A/HRC/17/9.

³⁹ 인권이사회, Views on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voluntary commitments and replies presented by the State under review: Myanmar, 17th session, 27 May 2011, UN document A/HRC/17/9/Add.1.

⁴⁰ 인권이사회,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Nauru, 17th session, 8 March 2011, UN document A/HRC/17/3.

⁴¹ 인권이사회, Views on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voluntary commitments and replies presented by the State under review: Nauru, 17th session, 30 May 2011, UN document A/HRC/17/3/Add.1.

⁴² 인권이사회,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Papua New Guinea, 18th session, 11 July 2011, UN document A/HRC/18/18.

⁴³ 인권이사회, Views on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voluntary commitments and replies presented by the State under review: Papua New Guinea, 18th session, 30 September 2011, UN document A/HRC/18/18/Add.1.

⁴⁴ 인권이사회,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Singapore, 18th session, 11 July 2011, UN document HRC/18/11.

⁴⁵ 인권이사회,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hailand, 19th session, 8 December 2011, UN Document A/HRC/19/8.

⁴⁶ *Talk Vietnam* "Vietnam prepares for switch to lethal injection", 2011년 10월 3일, <http://talkvietnam.com/2011/10/vietnam-prepares-switch-lethal-injection/> (2012년 2월 27일 접속).

⁴⁷ 국제앰네스티, Execution by lethal injection: a quarter century of state poisoning, ACT 50/007/2007.

⁴⁸ *Tuoi Tre News* "Dead man walking: judgement day", 2011년 3월 21일, <http://www.tuoiitrenews.vn/cmlink/tuoiitrenews/features/dead-men-walking-p1-judgment-day-1.25093>;
"Dead man walking: daybreak on death row" 2011년 3월 25일, <http://www.tuoiitrenews.vn/cmlink/tuoiitrenews/features/dead-men-walking-p2-daybreak-on-death-row-1.25625>;
"Dead man walking: back on the brink", 2011년 4월 4일 <http://www.tuoiitrenews.vn/cmlink/tuoiitrenews/features/dead-men-walking-p3-back-from-the-brink-1.26514>;
"The end of firing squads in Vietnam", 2011년 12월 15일 <http://www.tuoiitrenews.vn/cmlink/tuoiitrenews/features/the-end-of-firing-squads-in-vietnam-1.54637>;
"Firing range caretaker in Hanoi" 2011년 12월 16일

www.tuotirenews.vn/cmlink/tuotirenews/features/firing-range-caretaker-in-hanoi-1.54782;

"The last moments of death row criminals", 2011년 12월 19일

<http://www.tuotirenews.vn/cmlink/tuotirenews/features/the-last-moments-of-death-row-criminals-1.55068> (2012년 2월 27일 접속).

⁴⁹ <http://adpan.net>

⁵⁰ 고문방지위원회, 벨라루스에 대한 최종견해, Forty-seventh session, 2011년 10월 31일 ~ 11월 25일, para. 27.

⁵¹ 자유권위원회, 카자흐스탄에 대한 최종견해, 102nd session, 2011년 7월 11-29일, UN Doc. CCPR/C/KAZ/CO/1, 2011년 8월 19일, para. 12.

⁵² 개인청원 No. 1470/2006, *Toktakunov v. Kyrgyzstan*, 2011년 3월 28일 채택된 견해, UN Doc. CCPR/C/101/D/1470/2006.

⁵³ 개인청원 No. 1503/2006, *Akhadov v. Kyrgyzstan*, 2011년 3월 25일 채택된 견해, UN Doc. CCPR/C/102/D/1478/2006 2011년 4월 29일.

⁵⁴ 개인청원 No. 1304/2004, *Khoroshenko v. Russian Federation*, 2011년 3월 29일 채택된 견해, UN Doc. CCPR/C/101/D/1304/2004 of 29 April 2011.

⁵⁵ *Rrapo v. Albania* (application no. 58555/ 2010년 10월 10,11일); *Al Nashiri v. Poland* (2011년 5월 6일).

⁵⁶ 파기원은 2012년 1월 9일 사형선고를 뒤집었다.

⁵⁷ 검찰은 2012년 초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⁵⁸ 아동권리위원회, 이집트에 대한 최종견해, 57th session, 2011년 5월 30일 ~ 6월 17일, UN Doc. CRC/C/EGY/CO/3-4, paras. 38-39.

⁵⁹ In some instances, officials from the judiciary gave figures for executions and death sentences in the Iranian year which began in March 2010 or March 2011. As it was not always possible to attribute these executions accurately to a particular January-December period, these numbers have been omitted from these figures.

⁶⁰ 국제앰네스티는 추가적으로 6건의 공개처형을 기록했는데, 이로서 총합은 56건이 된다..

⁶¹ 인권이사회 제출된 이란 인권상황에 대한 사무총장의 최초 보고서, 2011년 3월 14일, UN doc. A/HRC/16/75, para. 15.

⁶² 국제앰네스티, "Addicted to death: Executions for drugs offences in Iran", MDE 13/090/2011, 2011년 12월

⁶³ 인권이사회 제출된 이란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최초 보고서, 2011년 3월 14일, UN doc. A/HRC/16/75, 유엔 총회에 제출된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사무총장 보고서, 2011년 9월 15일, UN doc. A/66/361, para. 13.

⁶⁴ 이란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 이란 인권상황, UN Doc. A/66/374 2011년 9월 23일, paras. 69-72.

⁶⁵ 자유권위원회, 이란에 대한 최종견해, 103rd session, 2011년 10월 17일 ~ 11월 4일, para. 10, 12-13, 23.

⁶⁶ 자유권위원회, 쿠웨이트에 대한 최종견해, 103rd session, 2011년 10월 17일 ~ 11월 4일, para. 6 and 14.

⁶⁷ "Arab spring at the heart of World Coalition debates", <http://www.worldcoalition.org/Arab-spring-at-the-heart-of-World-Coalition-debates.html> (2012년 2월 29일 접속).

⁶⁸ 국제앰네스티, "Saudi Arabia: Repression in the name of security", 2011년 12월, MDE 23/016/2011.

⁶⁹ 2012년 1월, 후아드 아흐메트 알리 압둘라가 처형됐다. 무하메드 타헤르 타베트 사모움과 최소 두명의 다른 이들이 사형집행 위기에 놓여있다.

⁷⁰ 자유권위원회, 에티오피아에 대한 최종견해, 102nd session, 2011년 7월 11-29일, UN Doc. CCPR/C/ETH/CO/1 of 19 August 2011, para. 19.

⁷¹ 케냐 항소 법원, *Godfrey Mutiso 사건*, 2010년 7월 30일자 판결

⁷²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초법적, 즉결, 자의적 처형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Addendum, Follow-up country recommendations – Kenya, UN Doc. A/HRC/17/28/Add.4. 2011년 4월 26일.

⁷³ 이 숫자에는 알샤바브 등의 소말리아 반군이나 소말리아 북부와 중앙에 있는 과도연방정부 연맹 민병대에 의해 공개적으로 불법 살해된 이들의 수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이슬람법의 자체적 해석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나 간첩활동을 이유로 사람들을 불법 살해했다.

⁷⁴ 2012년 2월 7일 법안이 의회에 재발의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사형이 규정되어 있었다. 발의자는 사형이 입법 과정에서 제거될 것이라 공개적으로 밝혔다.

⁷⁵ 러시아는 1996년 8월 사형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으나, 1996년부터 1999년 사이에 체첸공화국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2011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주목할 만한 사실과 통계 자료

2011년 사형집행방법

.....

독극물 주사형
참수형
교수형
총살형

공개처형이 있었던 국가들

.....

이란
북한
사우디 아라비아
소말리아

58 개국이
사형존치국
으로 분류되고 있다.

20 개국이
사형집행
을 실시했다.

140 개국이
사실상·법률상 사형폐지국이다.

3 명의 사람들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이란에서 처형 됐다.

벨라루스
는 유럽과 구소련 국가들 중 유일한
사형집행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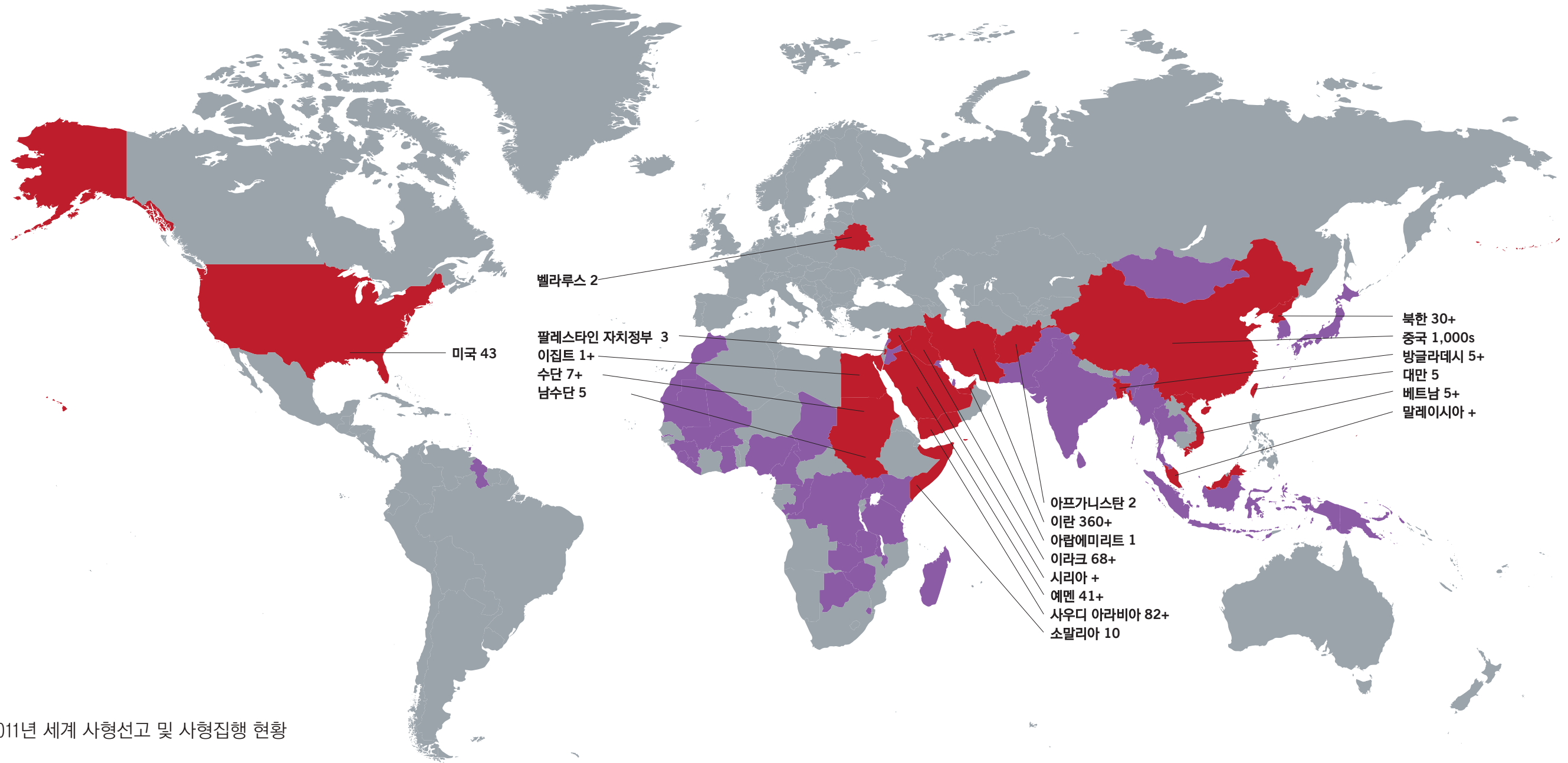
18,750 명 이상이
사형수
로 살고 있다.

미국 은
G8 회원국 중 유일하게
사형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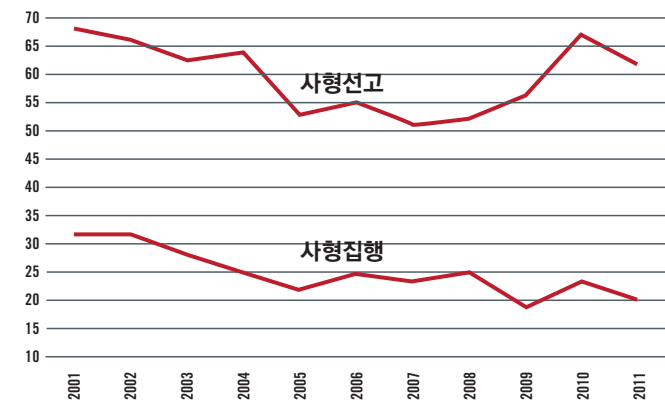
일본 에서는
19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집행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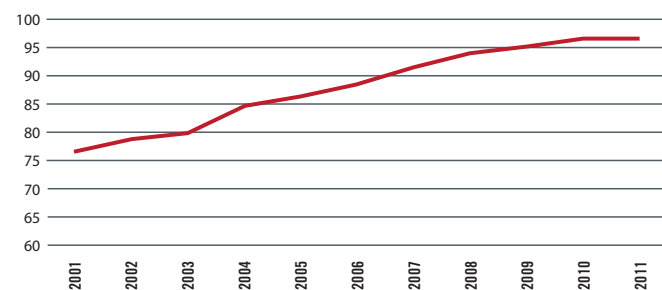
2011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2001 ~ 2011년 세계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 현황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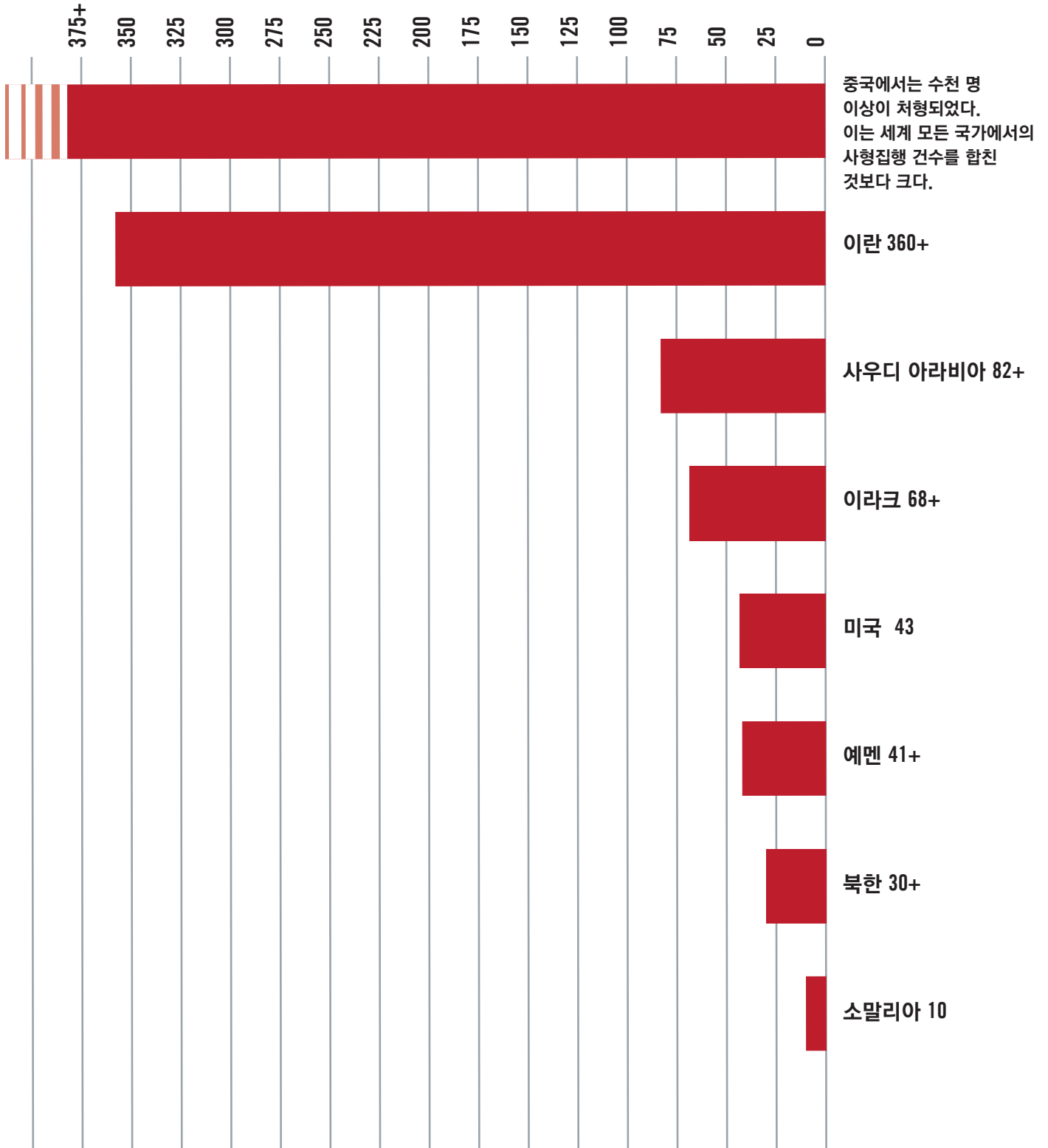


■ 사형집행과 사형선고가 있었던 국가, 숫자는 사형집행 건수
 ■ 사형선고만 있었던 국가

나라 이름 뒤 숫자와 "+"가 있을 경우, 이는 국제엠네스티가 추산한 숫자가 최소치임을 의미한다. 숫자 없이 "+"만 있을 경우, 해당 국가가 (한 건 이상) 사형을 선고했거나 집행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 지도는 각국의 국경과 관할영토에 대한 일반적인 위치만을 표시할 뿐이며,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에 대한 국제엠네스티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2011년 최상위 사형집행국





2011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2011년 세계 사형현황은 전세계적인 사형폐지 움직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사형을 적용하는 국가의 수는 예년에 비해 더 줄어들었으며 세계 모든 지역에서 사형폐지를 향한 움직임이 있었다. 미국은 G8 국가들 중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했지만 일리노이 주(州)가 16번째 사형폐지주가 되었고 오레곤 주지사가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포하는 등 일정 부분에서 발전이 있었다.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들은 점차 고립된다는 것이 명확해졌으며, 이들 국가들에서도 사형제도의 의존도는 낮아졌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등 소수의 국가들에서 사형집행 건수가 증가하기도 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19년만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사형집행이 없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시에라리온이 공식적인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포했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이 정치적인 격변기를 거쳐가고 있는 가운데 바레인에서는 사형집행이 없었으며, 튀니지의 새 정부는 사형의 적용을 줄여가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벨라루스는 여전히 유럽과 구소련 국가들 중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남았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가 취합한 2011년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수치를 담고 있으며 한 해 동안의 전세계적 사형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주요 발전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 가해자의 특성, 처형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International Secretariat
Peter Benenson House
1 Easton Street
London WC1X 0DW
United Kingdom

www.amnesty.org

문서번호: ACT 50/001/2012
2012년 3월

AMNESTY
INTERNATIONAL

